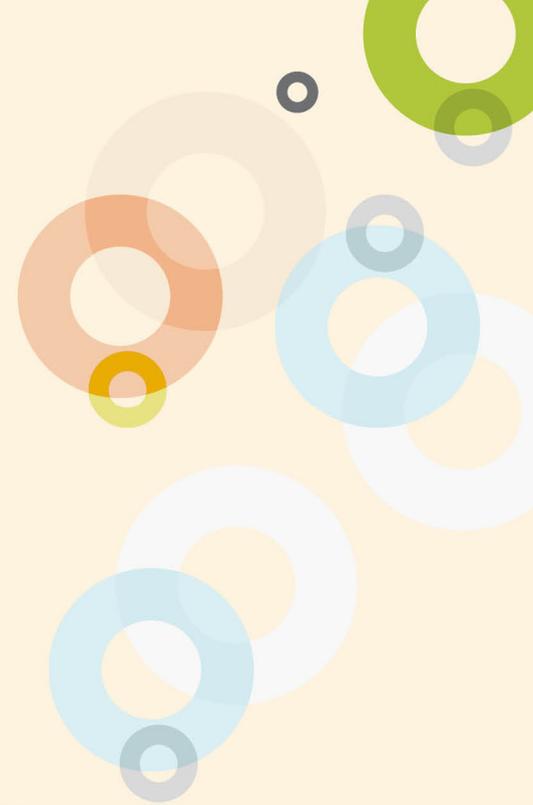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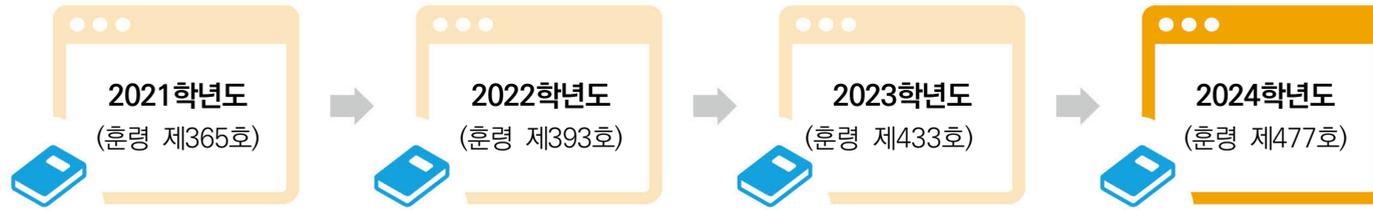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중학교

항목별 훈령 및 지침(기재요령)  
주요 변경 사항(최근 4년간)





영역 (항목)	내용 (2024 페이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유의 사항	<p>전항목 공통 기재 금지 사항 (p.19)</p>	<p>■ <b>문구(항목) 추가(기재요령)</b></p> <p>☞ 2.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교교육계획이나 학교교육과정에 따라 학교에서 실시한 각종 교육활동의 이수 상황(활동내용에 따른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 중심)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임.</p> <p>- 학교교육계획 이외의 체험활동은 교육관련기관(교육부 및 소속기관,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행사, <b>봉사활동 실적</b> 등만 학교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해 기재 가능함.</p> <p>3. 다음은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사항으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을 포함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음.</p> <p>가. 각종 공인어학시험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p>			<p>■ <b>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b></p> <p>☞ 2.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교교육계획이나 학교교육과정에 따라 학교에서 실시한 각종 교육활동의 이수상황(활동내용에 따른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 중심)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임.</p> <p>- 학교교육계획 이외의 체험활동은 교육관련기관(교육부 및 소속기관,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행사, 봉사활동 실적 등만 학교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해 기재 가능함.</p> <p>3. 다음은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사항으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을 포함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음.</p> <p>가. 각종 공인어학시험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p>
		<p>【기재불가 공인어학 시험】 영어(TOEIC, TOEFL, TEPS), 중국어(HSK), 일본어(JPT, JLPT), 프랑스어(DELF, DALF), 독일어(ZD, TESTDAF, DSH, DSD), 러시아어(TORFL), 스페인어(DELE), 상공회의소한자시험, 한자능력검정, 실용한자, 한자급수자격검정, YBM 상무한검, 한자급수인증시험, 한자자격검정 등 - 대학교육협의회, 자기소개서·교사추천서 유의사항 -</p> <p>나. 교과·비교과 관련 교외대회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 * 학교장의 참가 허락을 받아 참여한 각종 교외대회에서의 수상실적도 기재 불가함.</p> <p>다. 교외 기관·단체(장) 등에게 수상한 교외상(표창장, 감사장, 공로상 등도 기재 불가함)</p> <p>라. 교내·외 인증시험 참여 사실이나 그 성적</p> <p>마. <b>(고등학교 관련 내용으로 생략)</b></p> <p>바. 논문을 학회지 등에 투고 또는 등재하거나 학회 등에서 발표한 사실</p> <p>사. 도서출간 사실</p> <p>아.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 또는 등록 사실</p> <p>자. 어학연수, 봉사활동 등 해외 활동실적 및 관련 내용</p>		<p>【기재불가 공인어학 시험】 영어(TOEIC, TOEFL, TEPS), 중국어(HSK), 일본어(JPT, JLPT), 프랑스어(DELF, DALF), 독일어(ZD, TESTDAF, DSH, DSD), 러시아어(TORFL), 스페인어(DELE), 상공회의소한자시험, 한자능력검정, 실용한자, 한자급수자격검정, YBM 상무한검, 한자급수인증시험, 한자자격검정 등 <b>-대학교육협의회, 자기소개서교사추천서 유의사항-</b></p> <p>나. 교과·비교과 관련 교외대회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 * 학교장의 참가 허락을 받아 참여한 각종 교외대회에서의 수상실적도 기재 불가함.</p> <p>다. 교외 기관·단체(장) 등에게 수상한 교외상(표창장, 감사장, 공로상 등도 기재 불가함)</p> <p>라. 교내·외 인증시험 참여 사실이나 그 성적</p> <p>마. (고등학교 관련 내용으로 생략)</p> <p>바. 논문을 학회지 등에 투고 또는 등재하거나 학회 등에서 발표한 사실</p> <p>사. 도서출간 사실</p> <p>아.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출원 또는 등록 사실</p> <p>자. 어학연수, 봉사활동 등 해외 활동실적 및 관련 내용</p>	

영역 (항목)	내용 (2024 페이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유의 사항	<p>전항목 공통 기재 금지 사항 (p.19)</p>	<p>차. 부모(친인척 포함)의 사회·경제적 지위(직종명, 직업명, 직장명, 직위명 등) 암시 내용            카. 장학생·장학금 관련 내용            타.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 기관명*(<u>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u>), 상호명, 강사명** 등</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b>【참고】</b>  <input type="checkbox"/> *기관명            - 교육관련기관(교육부 및 소속기관*,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에 한함)의 경우 기관명을 입력할 수 있음.            * 교육부 소속기관: 대한민국학술원, 국사편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국립특수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총 6개 기관)            **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 [참고자료 5] 참조            ※ <u>교육관련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u>            -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에는 구체적인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을 입력함.  <input type="checkbox"/> **강사명            - 특정 강사명은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모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참여한 강의(또는 교육활동)의 강사를 말함.</p> </div> <p><u>파. 교내대회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실적</u>            ※ '수상경력' 이외 항목 입력 불가  <u>하. 자격증 명칭 및 취득 사실</u></p>		<p>차. 부모(친인척 포함)의 사회·경제적 지위(직종명, 직업명, 직장명, 직위명 등) 암시 내용            카. 장학생·장학금 관련 내용            타.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 기관명<sup>1)</sup>(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상호명, 강사명<sup>2)</sup> 등</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b>【참고】</b>  <b>1) 기관명</b>            - 교육관련기관(교육부 및 소속기관*,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에 한함)의 경우 기관명을 입력할 수 있음.            * 교육부 소속기관: 대한민국학술원, 국사편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국립특수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총 6개 기관)            **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 [참고자료 4] 참조            ※ 교육관련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에는 구체적인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을 입력함.  <b>2) 강사명</b>            - 특정 강사명은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모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참여한 강의(또는 교육활동)의 강사를 말함.</p> </div> <p>파. 교내대회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실적            ※ '수상경력' 이외 항목 입력 불가            하. 자격증 명칭 및 취득 사실</p>	
처리 요령	<p>보조부 작성·관리 방법 (p.28)</p>	<p>전년도와 동일</p>		<p>■ <b>문구(항목) 수정(훈령)</b></p> <p>☞ ④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필요한 보조부는 각 학교의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전산입력·관리하되,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누가기록 방법은 <u>시·도교육감</u>이 정한다.</p>	

영역 (항목)	내용 (2024 페이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처리 요령	항목별 입력 주체 (p.28)	<p>■ 문구(항목) 수정(해설)</p>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항 목</th> <th>입력주체</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2">출결상황 특기사항</td> <td>학급담임교사</td> </tr> <tr> <td rowspan="2">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특기사항</td> <td>자율활동·진로활동</td> <td>학급담임교사</td> </tr> <tr> <td>동아리활동</td> <td><b>해당 동아리 담당교사</b></td> </tr> <tr> <td rowspan="2">교과학습 발달상황</td> <td>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td> <td>교과담당교사</td> </tr> <tr> <td>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td> <td>학급담임교사</td> </tr> <tr> <td colspan="2">자유학기활동상황</td> <td><b>해당 활동별</b> 담당교사</td> </tr> <tr> <td colspan="2">독서활동상황</td> <td>교과담당교사, 학급담임교사</td> </tr> <tr> <td colspan="2">행동특성 및 종합의견</td> <td>학급담임교사</td> </tr> </tbody> </table>	항 목		입력주체	출결상황 특기사항		학급담임교사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특기사항	자율활동·진로활동	학급담임교사	동아리활동	<b>해당 동아리 담당교사</b>	교과학습 발달상황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교과담당교사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학급담임교사	자유학기활동상황		<b>해당 활동별</b> 담당교사	독서활동상황		교과담당교사, 학급담임교사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학급담임교사		<p>■ 문구(항목) 수정(해설)</p>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항 목</th> <th>입력주체</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2">출결상황 특기사항</td> <td>학급담임교사</td> </tr> <tr> <td rowspan="3">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영역별 특기 사항</td> <td><b>자율활동</b></td> <td>학급담임교사</td> </tr> <tr> <td><b>진로활동</b></td> <td>학급담임교사</td> </tr> <tr> <td>동아리활동</td> <td>해당 동아리 담당교사</td> </tr> <tr> <td rowspan="2">교과학습 발달상황</td> <td>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td> <td>교과담당교사</td> </tr> <tr> <td>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td> <td>학급담임교사</td> </tr> <tr> <td colspan="2">자유학기활동상황</td> <td>해당 활동별 담당교사</td> </tr> <tr> <td colspan="2">독서활동상황</td> <td>교과담당교사, 학급담임교사</td> </tr> <tr> <td colspan="2">행동특성 및 종합의견</td> <td>학급담임교사</td> </tr> </tbody> </table>	항 목		입력주체	출결상황 특기사항		학급담임교사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영역별 특기 사항	<b>자율활동</b>	학급담임교사	<b>진로활동</b>	학급담임교사	동아리활동	해당 동아리 담당교사	교과학습 발달상황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교과담당교사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학급담임교사	자유학기활동상황		해당 활동별 담당교사	독서활동상황		교과담당교사, 학급담임교사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학급담임교사	<p>■ 문구(항목) 수정(해설)</p>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항 목</th> <th>입력주체</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2">출결상황 특기사항</td> <td>학급담임교사</td> </tr> <tr> <td colspan="2"><b>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b></td> <td><b>학급담임교사</b></td> </tr> <tr> <td rowspan="3">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영역별 특기 사항</td> <td>자율활동</td> <td>학급담임교사</td> </tr> <tr> <td>진로활동</td> <td>학급담임교사</td> </tr> <tr> <td>동아리활동</td> <td>해당 동아리 담당교사</td> </tr> <tr> <td rowspan="2">교과학습 발달상황</td> <td>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td> <td>교과담당교사</td> </tr> <tr> <td>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td> <td>학급담임교사</td> </tr> <tr> <td colspan="2">자유학기활동상황</td> <td>해당 활동별 담당교사</td> </tr> <tr> <td colspan="2">독서활동상황</td> <td>교과담당교사, 학급담임교사</td> </tr> <tr> <td colspan="2">행동특성 및 종합의견</td> <td>학급담임교사</td> </tr> </tbody> </table>	항 목		입력주체	출결상황 특기사항		학급담임교사	<b>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b>		<b>학급담임교사</b>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영역별 특기 사항	자율활동	학급담임교사	진로활동	학급담임교사	동아리활동	해당 동아리 담당교사	교과학습 발달상황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교과담당교사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학급담임교사	자유학기활동상황		해당 활동별 담당교사	독서활동상황		교과담당교사, 학급담임교사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학급담임교사
	항 목		입력주체																																																																																				
	출결상황 특기사항		학급담임교사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특기사항	자율활동·진로활동	학급담임교사																																																																																					
	동아리활동	<b>해당 동아리 담당교사</b>																																																																																					
교과학습 발달상황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교과담당교사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학급담임교사																																																																																					
자유학기활동상황		<b>해당 활동별</b> 담당교사																																																																																					
독서활동상황		교과담당교사, 학급담임교사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학급담임교사																																																																																					
항 목		입력주체																																																																																					
출결상황 특기사항		학급담임교사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영역별 특기 사항	<b>자율활동</b>	학급담임교사																																																																																					
	<b>진로활동</b>	학급담임교사																																																																																					
	동아리활동	해당 동아리 담당교사																																																																																					
교과학습 발달상황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교과담당교사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학급담임교사																																																																																					
자유학기활동상황		해당 활동별 담당교사																																																																																					
독서활동상황		교과담당교사, 학급담임교사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학급담임교사																																																																																					
항 목		입력주체																																																																																					
출결상황 특기사항		학급담임교사																																																																																					
<b>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b>		<b>학급담임교사</b>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영역별 특기 사항	자율활동	학급담임교사																																																																																					
	진로활동	학급담임교사																																																																																					
	동아리활동	해당 동아리 담당교사																																																																																					
교과학습 발달상황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교과담당교사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학급담임교사																																																																																					
자유학기활동상황		해당 활동별 담당교사																																																																																					
독서활동상황		교과담당교사, 학급담임교사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학급담임교사																																																																																					
학업 중단 학생의 정정 주체 (p.29)		전년도와 동일			<p>■ 문구(항목) 수정(해설)</p> <p>☞ 나.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시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대장 결재 절차에 따라 발견 해년도 담임교사가 정정처리를 하며, 졸업생 및 <b>학업 중단 학생</b>의 경우 업무담당자가 정정한다.</p>																																																																																		
학생부 대필 금지 (p.29)	<p>■ 문구(항목) 수정(해설)</p> <p>☞ 다. 학교생활기록부의 서술형 항목은 교사가 직접 관찰·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입력하며,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육활동 중 교사 지도 하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는 활용할 수 있다.</p>	<p>■ 문구(항목) 수정(해설)</p> <p>☞ 다. 학교생활기록부의 서술형 항목은 교사가 직접 관찰·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입력하며,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육활동 중 교사 지도하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는 활용할 수 있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육활동 중 교사 지도하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로 학생부 기재 시 활용 가능한 자료는 아래 사례로 한정함. ① 동료평가서, ② 자기평가서, ③ 수업산출물(수행평가 결과물 포함), ④ 소감문, ⑤후감</p> </div> <p>- 사용자는 학생부 내 서술형 항목 입력을 위해 학생·학부모 등에게 상기 ①~⑤의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일체의 자료를 요구하거나 제공 받아서는 안 됨.</p>																																																																																					

영역 (항목)	내용 (2024 페이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처리 요령	학생부 대필 금지 (p.29)	<p>*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육활동 중에 교사 지도하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로 학생부 기재 시 활용 가능한 자료는 아래 사례로 한정함            ① 동료평가서, ② 자기평가서, ③ <b>수업 신출물</b>(수행평가 결과물 포함), ④ 소감문, ⑤ 독후감</p> <p>- 사용자는 학생부 내 서술형 항목 입력을 위해 학생·학부모 등에게 상기 ①~⑥의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일체의 자료를 요구하거나 제공 받아서는 안 됨.</p>			
	부정청탁의 금지 (p.29)	전년도와 동일		<p>■ 문구(항목) 수정(해설)</p> <p>☞ 10.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b>논문심사·학위수여</b>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직하도록 하는 행위</p>	
	영문 입력의 부득이한 경우 (p.29)	<p>■ 문구(항목) 수정(해설)</p> <p>☞ 바. 학교생활기록부의 문자는 한글로 입력하되, 부득이한 경우 영문으로 입력할 수 있다.</p> <p>- 외국인 성명 - 도로명 주소에 포함된 영문 - 일반화된 명사(CEO, PD, UCC, IT, POP, CF, TV, PAPS, SNS, PPT 등) - 고유 명사(<b>외국학교명, 도서명과 저자명 등</b>)</p>	<p>■ 문구(항목) 수정(해설)</p> <p>☞ 바. 학교생활기록부의 문자는 한글로 입력하되, 부득이한 경우 영문으로 입력할 수 있다.</p> <p>- 외국인 성명 - 도로명 주소에 포함된 영문 - 일반화된 명사(CEO, PD, UCC, IT, POP, CF, TV, PAPS, SNS, PPT 등) - 고유 명사(<b>도서명과 저자명 등</b>)</p>		
각종 자료의 정의 (p.30)	전년도와 동일		<p>■ 문구(항목) 수정(해설)</p> <p>☞ ※ '각종 자료' 라 함은 학적 특기사항, 출결상황,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특기사항(누가기록 포함), <b>교과학습발달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자유학기 필수)</b>, 자유학기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누가기록 포함) 등을 말함.</p>		

영역 (항목)	내용 (2024 페이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처리 요령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일까지 입력하지 못한 당해 학년도 누락 자료 처리 방법 (p.30)	전년도와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구(항목) 수정(해설)</li> <li>☞ ○ 수상대상자가 시상일자 이전에 전출 간 경우 전입교에서 [학생생활-수상경력-학급별수상관리]의 {학급별수상관리} 탭에서 입력할 수 있으며, 수상연월일은 전출교에서 보내온 공문을 근거로 입력함.</li> </ul>
	훈령 제433호 이전 훈령 적용 학생의 재취학 시 학교폭력 조치사항 이기 방법 (p.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구(항목) 신설(해설)</li> <li>☞ 너. 훈령 제477호(2024.3.1.) 이전 훈령의 적용을 받았던 학생이 재취학, 편입학 등의 사유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옮겨 적어야 할 경우, 정정 절차를 거쳐 기존의 내용은 삭제하고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에 입력해야 한다.</li> </ul>
	전입생 이전 학년도 자료의 정정 주체 및 전출교의 책무 (p.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구(항목) 위치 이동</li> <li>☞ ○ 이전 학년도 자료의 정정은 전출교에서 자료를 받아 전입교에서 처리함.</li> <li>※ 전출교는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을 대조·확인 작업을 철저히 하여 오류가 없도록 확인하고 자료를 전송할 책임이 있음.</li> <li>○ (해설로 위치 이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li> <li>☞ ○ 이전 학년도 자료의 정정은 전출교에서 자료를 받아 전입교에서 처리함.</li> <li>※ 전출교는 <u>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의</u> 대조·확인 작업을 철저히 하여 오류가 없도록 확인하고 자료를 전송할 책임이 있음.</li> </ul>		
인적·학적 사항	특기사항 입력 내용 (p.33)	전년도와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구(항목) 수정(훈령)</li> <li>☞ ④ '특기사항'란에는 학적변동의 사유를 입력한다.</li> <li>■ 훈령 제393·433호 (2·3학년)</li> <li>제7조(인적·학적사항)</li> <li>④ '특기사항'란에는 학적변동의 사유를 입력한다. 특기사항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한다.</li> </ul>

영역 (항목)	내용 (2024 페이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유예의 사유 (p.34)	전년도와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구(항목) 수정(훈령)</li> <li>☞ 16. 유예: 재학 중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b>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b>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함(학칙에 따라 '정원 외 학적관리'할 수 있음).</li> </ul>
	명예졸업의 인정 (p.34)	전년도와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구(항목) 수정 및 추가(훈령)</li> <li>☞ 23. 명예졸업: <b>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명예졸업으로 인정한 경우를 말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예졸업은 <b>수료 및 졸업(「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 학력인정(「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98조)이나 자격인정(「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9조, 제100조, 제101조, 제102조, 제103조)과 무관함.</b></li> </ul> </li> </ul>
인적 · 학적 사항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적변동 제한 (p.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구(항목) 수정(해설)</li> <li>☞ 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항제8호(전학)에 따른 조치사항을 조치 결정일자(교육지원청 내부결재일)와 함께 결정 즉시 입력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폭력 <b>가해학생</b>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확정 후 이행 완료 시까지 학적변동을 제한함. <b>단, 학교의 장이 관련 학생 간 분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치가 미이행 되었더라도 내부 결재를 거쳐 학적변동을 수반하는 전학 등의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음.</b></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구(항목) 수정(해설)</li> <li>☞ 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항제8호(전학)에 따른 조치사항을 조치 결정일자(교육지원청 내부결재일)와 함께 결정 즉시 입력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b>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된 때부터</b>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b>원칙적으로</b> 학적변동을 제한함. 단, 학교의 장이 관련 학생 간 분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치가 미이행 되었더라도 내부결재를 거쳐 학적변동을 수반하는 전학 등의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음.</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구(항목) 삭제(해설)</li> <li>☞ 마. <del>(삭제)</del></li> </ul> <div style="border: 1px dashed red; padding: 5px;"> <p><b>2·3학년 학생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입력</b></p> <p>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항제8호(전학)에 따른 조치사항을 조치결정 일자(교육지원청 내부결재일)와 함께 결정 즉시 입력한다.</p> <p>※ 학교폭력 사안이 신고된 때부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조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가해학생의 신청에 의한 학적 변동은 제한함. 다만, 가해학생에게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8호(전학)에 따른 조치와 함께 수 개의 조치가 동시에 부과된 경우 교육장은 위 제8호(전학)의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음.</p> </div>	
	정당한 해외 출국 시 증빙자료 (p.36)	전년도와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구(항목) 수정(해설)</li> <li>☞ 나) 부 또는 모 등 부양의무자 중 1인과 출국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는 ① 부 또는 모의 공무원 해외파견 및 이에 준하는 경우여야 하며 ② 증빙자료(해외파견 관련 소속기관 공문 등), 거주 기간(재외국민등록부등본상의 체류기간), 실제 체류 기간(<b>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b>), 재학 기간 등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제한함.</li> </ul>

영역 (항목)	내용 (2024 페이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인적 · 학적 사항	유예의 사유 (p.36)	전년도와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구(항목) 수정 및 추가(해설)</li> <li>☞ 1) 재학 중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b>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b>」 제5조 및 제10조에 따라 시·도교육감에게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하는 것으로 학칙에 의해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li> <li>※ 해당 대안교육기관의 시·도교육감(타 시·도 포함) 등록 여부 확인 필수(상세 내용은 소관 부서(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의 공문 및 안내사항 참조)</li> <li>※ 학력인정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등은 모두 다른 기관임에 유의((참고자료 3) 참조)</li> </ul>	
	유예 또는 정원 외 학적관리된 학생의 면제 처리 기준 (p.37)	전년도와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구(항목) 수정(해설)</li> <li>☞ 3) 유예 또는 정원 외 학적관리된 학생이 외국에서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치거나 국내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합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면제'로 처리할 수 있다.</li> </ul>	
	명예졸업의 처리 절차 (p.37)	전년도와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구(항목) 수정 및 추가(해설)</li> <li>☞ 1) <u>명예졸업은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명예졸업으로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u></li> <li>※ 명예졸업 업무 처리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심의 주체: 학업성적관리위원회</li> <li>② 심의 절차: <b>심의 신청</b>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개최 및 심의 → 명예졸업 인정 시 교육정보시스템에 명예졸업 대상으로 등록 → 당해 학년도 졸업일을 기준으로 명예졸업 처리</li> </ul> </li> </ul>	
	학생 주소 연계의 활용 (p.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구(항목) 신설(기재요령)</li> <li>☞ 라. 교육정보시스템 [학적]-[기본학적관리]-[학생주소연계]를 통하여 학생의 주소를 입력할 수 있다.</li> </ul>		
학생정보 변경 시 처리 방법 (p.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구(항목) 수정 및 추가(기재요령)</li> <li>☞ 가. 학생정보가 변경된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을 통하여 정정한다.</li> <li>※ 재학생 및 졸업생의 개명(표기방식 변경 포함)으로 인한 정정은 <b>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학생 본인의 개명 이력이 표기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 여권 등)를 근거로 함.</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구(항목) 수정 및 추가(기재요령)</li> <li>☞ 가. 신입생의 학생정보 변경은 '수정' 처리하며, 재학생 및 졸업생의 학생정보 변경은 '정정' 처리한다. 다만, 신입생의 개명(표기방식 변경 포함)은 정정대장을 작성하여 '정정' 처리하고, 신입생과 재학생의 주소는 별도 정정절차 없이 교육정보시스템의 [누가주소등록] 탭에서 처리한다.</li> <li>※ <b>개명(표기방식 변경 포함)으로 인한 정정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학생 본인의 개명 이력이 표기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 여권 등)를 근거로 함.</b></li> <li>※ 학생정보 정정의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li> </ul>			

영역 (항목)	내용 (2024 페이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인적 · 학적 사항	학생정보 변경 시 처리 방법 (p.38)	<p>※ 신입생은 학생정보 중 학생 본인의 개명(표기 방식 변경 포함)만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을 작성하여 정정함.</p> <p>〈기재 경로〉</p> <p>▶ 개명 이외의 학생정보 수정: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적]-[기본학적관리]-[기본신상관리]</p> <p>※ 2, 3학년의 학생정보 정정과 졸업생의 인적사항 정정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없이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을 작성하여 정정함.</p> <p>〈기재 경로〉</p> <p>▶ 재학생: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생부]-[정정대장 관리]-[정정대장작성]</p> <p>▶ 졸업생: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적]-[졸업생 자료관리]-[졸업생학생부정정대장작성]</p> <p>▶ 보존시스템으로 자료가 이관된 졸업생: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생부보존]-[학생부보존(초/중/고/특)]-[학생부정정관리]-[졸업생학생부 정정대장작성]</p>	〈기재 경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입생의 학생정보(성명 제외) 수정: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적-기본학적관리-기본신상관리]</li> <li>▶ 재학생: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생부-정정대장관리-정정대장작성]</li> <li>▶ 학업중단학생: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생부-정정대장관리-정정대장작성], {재학이년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입생이 입학 학년도에 학업을 중단하고 개명을 제외한 학생정보 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학적반영 취소 후 수정</li> </ul> </li> <li>▶ 졸업생: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적-졸업생자료관리-졸업생학생부정정대장작성]</li> <li>▶ 보존시스템으로 자료가 이관된 졸업생: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생부보존-학생부정정관리-졸업생학생부정정대장작성]</li> </ul>			
	해외 수학 기간 및 외국학교명 기재 금지 (p.39)	전년도와 동일			<p>■ 문구(항목) 추가(기재요령)</p> <p>☞ 나. 유예·면제·재취학·편입학·유급·조기진급 등 중요한 학적변동인 경우 학적사항의 '특기사항'에 학적변동의 사유를 입력한다.</p> <p>※ 중요한 학적변동은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귀국학생 등'의 재취학, 편입학 시 해외 수학 기간 및 외국학교명은 '특기사항'에 기재하지 않음.</p>				
	정당한 해외 출국으로 면제 (p.39)	전년도와 동일			<p>■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p> <p>☞ &lt;예시&gt; 정당한 해외 출국으로 취학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p> <table border="1" data-bbox="799 1333 1866 1458"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학적사항</td> <td>2024년 02월 15일 □□초등학교 제6학년 졸업 2024년 03월 01일 ○○중학교 제1학년 입학(2024년 11월 04일 면제)</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특기사항</td> <td>2024.11.04. 정당한 해외 출국으로 인한 면제</td> </tr> </table>		학적사항	2024년 02월 15일 □□초등학교 제6학년 졸업 2024년 03월 01일 ○○중학교 제1학년 입학(2024년 11월 04일 면제)	특기사항
학적사항	2024년 02월 15일 □□초등학교 제6학년 졸업 2024년 03월 01일 ○○중학교 제1학년 입학(2024년 11월 04일 면제)								
특기사항	2024.11.04. 정당한 해외 출국으로 인한 면제								

영역 (항목)	내용 (2024 페이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인적 · 학적 사항	대안교육기관 재학으로 유예 (p.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구(항목) 신설(기재요령)</li> <li>☞ &lt;예시&gt; 대안교육기관 재학으로 유예한 경우</li> </ul> <table border="1"> <tr> <td>학적사항</td> <td>2023년 02월 10일 □□초등학교 제6학년 졸업 2023년 03월 02일 ○○중학교 제1학년 입학(2024년 03월 28일 유예)</td> </tr> <tr> <td>특기사항</td> <td>2024.03.28. 대안교육기관 재학으로 인한 유예 2024.03.29. 정원 외 학적관리</td> </tr> </table>	학적사항	2023년 02월 10일 □□초등학교 제6학년 졸업 2023년 03월 02일 ○○중학교 제1학년 입학(2024년 03월 28일 유예)	특기사항	2024.03.28. 대안교육기관 재학으로 인한 유예 2024.03.29. 정원 외 학적관리	
	학적사항	2023년 02월 10일 □□초등학교 제6학년 졸업 2023년 03월 02일 ○○중학교 제1학년 입학(2024년 03월 28일 유예)							
	특기사항	2024.03.28. 대안교육기관 재학으로 인한 유예 2024.03.29. 정원 외 학적관리							
질병으로 유예 후 면제 (p.40)	전년도와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li> <li>☞ &lt;예시&gt; 질병으로 유예 후 면제받은 경우</li> </ul> <table border="1"> <tr> <td>학적사항</td> <td>2021년 02월 10일 ○○초등학교 제6학년 졸업 2021년 03월 02일 □□중학교 제1학년 입학(2022년 03월 15일 유예)(2024년 04월 05일 면제)</td> </tr> <tr> <td>특기사항</td> <td>2022.03.15. 질병치료를 인한 유예 2022.03.16. 정원 외 학적관리 2024.04.05. 질병으로 사망</td> </tr> </table>	학적사항	2021년 02월 10일 ○○초등학교 제6학년 졸업 2021년 03월 02일 □□중학교 제1학년 입학(2022년 03월 15일 유예)(2024년 04월 05일 면제)	특기사항	2022.03.15. 질병치료를 인한 유예 2022.03.16. 정원 외 학적관리 2024.04.05. 질병으로 사망			
학적사항	2021년 02월 10일 ○○초등학교 제6학년 졸업 2021년 03월 02일 □□중학교 제1학년 입학(2022년 03월 15일 유예)(2024년 04월 05일 면제)								
특기사항	2022.03.15. 질병치료를 인한 유예 2022.03.16. 정원 외 학적관리 2024.04.05. 질병으로 사망								
2·3학년 학생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입력 (p.41)	전년도와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구(항목) 삭제(기재요령)</li> <li>☞ <del>다. &lt;삭제&gt;</del></li> </ul>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p>[2·3학년 학생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입력]</p> <p>다. '특기사항'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제1항제8호(전학)에 따른 조치사항은 조치결정 일자(교육지원청 내부 결재일)와 함께 결정 즉시 입력한다.</p> <p>※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적-기본학적관리-기본신상 관리]에서 [학적사항 탭의 '학적특기사항'에 입력함.</p> </div>							

영역 (항목)	내용 (2024 페이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2·3학년 학생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입력 (p.41)					<p>〈예시〉 학교폭력 관련 조치를 받은 경우</p> <table border="1" data-bbox="1765 293 2185 574"> <tr> <td data-bbox="1765 293 1855 475">학적사항</td> <td data-bbox="1855 293 2185 475">2024년 02월 15일 ○○초등학교 제6학년 졸업 2024년 03월 01일 □□중학교 제1학년 입학(2024년 06월 12일 전출) 2024년 06월 13일 △△중학교 제1학년 전입학</td> </tr> <tr> <td data-bbox="1765 475 1855 574">특기사항</td> <td data-bbox="1855 475 2185 574">2024.06.0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전학 조치</td> </tr> </table>	학적사항	2024년 02월 15일 ○○초등학교 제6학년 졸업 2024년 03월 01일 □□중학교 제1학년 입학(2024년 06월 12일 전출) 2024년 06월 13일 △△중학교 제1학년 전입학	특기사항	2024.06.0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전학 조치
학적사항	2024년 02월 15일 ○○초등학교 제6학년 졸업 2024년 03월 01일 □□중학교 제1학년 입학(2024년 06월 12일 전출) 2024년 06월 13일 △△중학교 제1학년 전입학									
특기사항	2024.06.0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전학 조치									
인적 · 학적 사항	수료 기준 (p.41)	<p>■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p> <p>☞ 가. 입학·재취학·편입학은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인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남은 시점까지 수시로 입급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 제67조, 제73조).</p> <p>※ 학생의 출석일수가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미만이 될 경우에는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수업일수 부족 등으로 수료 또는 졸업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당해 학년도 입학·재취학·편입학 등은 불가능함.</p> <p>※ 다만, 학생과 학부모가 원할 경우 당해 학교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생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허가할 수 있음(당해 학년도 유예 후 재취학포함). 이때 학교에서는 허가에 앞서 학생, 학부모에게 당해 학년도에는 수업일수 부족으로 수료 또는 졸업이 되지 않음을 정확히 주지 및 확인시켜 주어야 함.</p>	<p>■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p> <p>☞ 가. 입학·재취학·편입학은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인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남은 시점까지 수시로 입급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 제67조, 제74조).</p> <p>※ 학생의 출석일수가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미만이 될 경우에는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 부족 등으로 수료 또는 졸업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당해 학년도 입학·재취학·편입학 등은 불가능함.</p> <p>※ 다만, 학생과 학부모가 원할 경우 당해 학교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생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허가할 수 있음(당해 학년도 유예 후 재취학포함). 이때 학교에서는 허가에 앞서 학생, 학부모에게 당해 학년도에는 출석일수 부족으로 수료 또는 졸업이 되지 않음을 정확히 주지 및 확인시켜 주어야 함.</p>							
	전입학 수료 기준 (p.41)	<p>■ 문구(항목) 신설(기재요령)</p> <p>☞ 나. 전입학의 경우 전출교와 전입교의 출석일수 합이 전입교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이 되는 경우에만 해당 학년을 수료할 수 있다.</p>								

영역 (항목)	내용 (2024 페이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전출·입 일자 기준일 (p.41)	<p>■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p> <p>☞ 다. 전출일과 전입일이 동일한 경우 당일은 전입일로 하고 전출일은 전입일 하루 전으로 처리한다. ※ 신입생의 경우 입학일에 전출·전입이 발생 시 전출일과 전입일을 동일한 날짜로 처리할 수 있음.</p> <p style="text-align: center;">〈기재 경로〉</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전출교에서는 <b>수업일수를 '1'로</b> 등록하며, 전입교에서는 [학적]-[전입관리]-[이전출결자료등록]에서 수업일수에 <b>'0'을</b> 등록함. ▶ 전출일에 실시한 전출교의 창의적 체험활동 누가기록은 등록하지 않음.</p> </div>	<p>■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p> <p>☞ 라. 전출일과 전입일이 동일한 경우 당일은 전입일로 하고 전출일은 전입일 하루 전으로 처리한다. ※ 신입생의 경우 입학일에 전출·전입이 발생 시 전출일과 전입일을 동일한 날짜로 처리할 수 있으며 <b>기재경로는 다음과 같다.</b></p> <p style="text-align: center;">〈기재 경로〉</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전출교에서는 수업일수를 '1'로 등록하며, 전입교에서는 [학적]-[전입관리]-[이전출결자료등록]에서 수업일수에 '0'을 등록함. ▶ 전출일에 실시한 전출교의 창의적 체험활동 누가기록은 등록하지 않음.</p> </div>		<p>■ 문구(항목) 삭제(기재요령)</p> <p>☞ 라. 전출일과 전입일이 동일한 경우 당일은 전입일로 하고 전출일은 전입일 하루 전으로 처리한다. <b>※ 신입생의 경우 입학일에 전출·전입이 발생 시 전출일과 전입일을 동일한 날짜로 처리할 수 있으며 기재경로는 다음과 같다.</b></p> <p style="text-align: center;">〈기재경로 삭제〉</p>
인적 · 학적 사항	유급·재취학· 편입학 학생의 학교생활 기록부 입력 방법 (p.42)	전년도와 동일	<p>■ 문구(항목) 추가(기재요령)</p> <p>☞ 1) 재취학·편입학한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입력할 때는 학년이력, 인적·학적사항,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제외한 항목(수업일수, 출결상황, 성적, 기타 비교과 영역 등 제반 내용)에 대하여 재취학·편입학일 이전의 내용은 학업중단 시의 내용으로, 재취학·편입학일 이후의 내용은 재취학·편입학 후 새로 수행하는 사항을 입력한다. ※ <b>재취학·편입학 등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의 중복 기간 자료를 삭제하는 경우, 삭제 전 출력물을 객관적 증빙자료로 보관한다.</b></p>	<p>■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p> <p>☞ 1) <b>유급·재취학·편입학</b>한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입력할 때는 학년이력, 인적·학적사항,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제외한 항목(수업일수, 출결상황, 성적, 기타 비교과 영역 등 제반 내용)에 대하여 재취학·편입학일 이전의 내용은 학업중단 시의 내용으로, <b>유급·재취학·편입학</b> 이후의 내용은 <b>유급·재취학·편입학</b> 후 새로 수행하는 사항을 입력한다. ※ <b>유급·재취학·편입학</b> 등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의 중복기간 자료를 삭제하는 경우, 삭제 전 출력물을 객관적 증빙자료로 보관한다.</p>	
	정원 외 학적 관리 방법 (p.43)	전년도와 동일	<p>■ 문구(항목) 추가(기재요령)</p> <p>☞ 바. 정원 외 학적관리 방법</p> <p>1) 입학 이후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결석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유예 처리 후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p>	<p>■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p> <p>☞ 바. 정원 외 학적관리 방법</p> <p>1) 입학 이후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결석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유예 처리 후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p>	<p>■ 문구(항목) 수정 및 추가(기재요령)</p> <p>☞ 바. 정원 외 학적관리 방법</p> <p>1) 입학 이후 취학 의무를 유예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p>

영역 (항목)	내용 (2024 페이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인적 · 학적 사항	정원 외 학적 관리 방법 (p.43)		<p>〈예시〉 정원 외 학적 관리를 하기 위하여 유예 처리를 한 경우</p> <table border="1"> <tr> <td>학적사항</td> <td>2022년 02월 15일 △△초등학교 제6학년 졸업 2022년 03월 02일 □□중학교 제1학년 입학(2022년 06월 28일 유예)</td> </tr> <tr> <td>특기사항</td> <td>2022.06.28. 장기결석으로 인한 유예 2022.06.29. 정원 외 학적관리</td> </tr> </table> <p>※ <b>장기결석의 구체적 사유는 ‘출결상황’의 특기 사항에 기재함.</b></p>	학적사항	2022년 02월 15일 △△초등학교 제6학년 졸업 2022년 03월 02일 □□중학교 제1학년 입학(2022년 06월 28일 유예)	특기사항	2022.06.28. 장기결석으로 인한 유예 2022.06.29. 정원 외 학적관리	<p>〈예시〉 <b>정원 외 학적 관리</b></p> <table border="1"> <tr> <td>학적사항</td> <td>2023년 02월 15일 △△초등학교 제6학년 졸업 2023년 03월 02일 □□중학교 제1학년 입학(2023년 06월 28일 유예)</td> </tr> <tr> <td>특기사항</td> <td>2023.06.28. 장기결석으로 인한 유예 2023.06.29. 정원 외 학적관리</td> </tr> </table> <p>※ 장기결석의 구체적 사유는 ‘출결상황’의 특기 사항에 기재함.</p>	학적사항	2023년 02월 15일 △△초등학교 제6학년 졸업 2023년 03월 02일 □□중학교 제1학년 입학(2023년 06월 28일 유예)	특기사항	2023.06.28. 장기결석으로 인한 유예 2023.06.29. 정원 외 학적관리	<p>〈예시〉 유예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p> <table border="1"> <tr> <td>학적사항</td> <td>2024년 02월 15일 △△초등학교 제6학년 졸업 2024년 03월 01일 □□중학교 제1학년 입학(2024년 07월 09일 유예)</td> </tr> <tr> <td>특기사항</td> <td>2024.07.09. 질병치료로 인한 유예 2024.07.10. 정원 외 학적관리</td> </tr> </table> <p><b>2) 입학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결석 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적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b></p> <p>※ 학년도 말에 결석이 시작되어 진급처리가 된 경우 정원 외 학적 처리 산정 기준일은 다음 학년도 3월 1일임.</p> <p>〈예시〉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p> <table border="1"> <tr> <td>학적사항</td> <td>2024년 02월 15일 △△초등학교 제6학년 졸업 2024년 03월 01일 □□중학교 제1학년 입학(2024년 06월 14일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td> </tr> <tr> <td>특기사항</td> <td>2024.06.1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td> </tr> </table> <p>〈근거: 교육부 기초학력진로교육과-2667(23.7.10.)〉</p>	학적사항	2024년 02월 15일 △△초등학교 제6학년 졸업 2024년 03월 01일 □□중학교 제1학년 입학(2024년 07월 09일 유예)	특기사항	2024.07.09. 질병치료로 인한 유예 2024.07.10. 정원 외 학적관리	학적사항	2024년 02월 15일 △△초등학교 제6학년 졸업 2024년 03월 01일 □□중학교 제1학년 입학(2024년 06월 14일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특기사항	2024.06.1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학적사항	2022년 02월 15일 △△초등학교 제6학년 졸업 2022년 03월 02일 □□중학교 제1학년 입학(2022년 06월 28일 유예)																			
	특기사항	2022.06.28. 장기결석으로 인한 유예 2022.06.29. 정원 외 학적관리																			
학적사항	2023년 02월 15일 △△초등학교 제6학년 졸업 2023년 03월 02일 □□중학교 제1학년 입학(2023년 06월 28일 유예)																				
특기사항	2023.06.28. 장기결석으로 인한 유예 2023.06.29. 정원 외 학적관리																				
학적사항	2024년 02월 15일 △△초등학교 제6학년 졸업 2024년 03월 01일 □□중학교 제1학년 입학(2024년 07월 09일 유예)																				
특기사항	2024.07.09. 질병치료로 인한 유예 2024.07.10. 정원 외 학적관리																				
학적사항	2024년 02월 15일 △△초등학교 제6학년 졸업 2024년 03월 01일 □□중학교 제1학년 입학(2024년 06월 14일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특기사항	2024.06.1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귀국 학생 등의 학적 처리 방법 (p.44)	전년도와 동일	<p>■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p> <p>☞ 4) 귀국학생 등이 외국학교에서 수학한 같은 기간의 기록은 학년을 결정하는 참고자료로, 해당 학년의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기록이 아니므로 해당 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하지 않는다. <b>다만, 학적사항의 ‘특기사항’란에 외국학교명과 수학기간은 입력 할 수 있다.</b></p>																			
귀국학생 등의 학년 결정 (p.44)	전년도와 동일			<p>■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p> <p>☞ 5) 외국인인 학생과 정당한 해외 출국으로 <b>면제된 학생이</b> 국내학교에 재취학·편입하고자 할 때, 외국학교의 재학기간과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근거로 학년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p>																	

영역 (항목)	내용 (2024 페이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인적 · 학적 사항	귀국 학생 등의 학적 처리 방법 (p.44)	<p>■ <b>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b></p> <p>☞ &lt;예시&gt; 학업을 중단(면제)하였다가 다시 들어온 경우</p> <table border="1" data-bbox="312 383 769 589"> <tr> <td>학적사항</td> <td>2019년 02월 12일 □□초등학교 제6학년 졸업 2019년 03월 04일 ○○중학교 제1학년 입학 (2019년 07월 18일 면제) 2021년 08월 06일 ○○중학교 제3학년 재취학</td> </tr> <tr> <td>특기사항</td> <td>2019.07.18. 전 가족 일본 출국(부 파견 근무) 2019.09.01.-2021.07.30. 일본 ○○중학교 재학 2021.08.01. 전 가족 귀국(부 파견 종료)</td> </tr> </table> <p>※ 의무교육대상자가 의무교육을 중단하였다가 의무교육연령 내에 다시 의무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학년, 학교 및 학교급을 달리하여도 재취학으로 처리함(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남은 시점까지 1학년도 <b>처음</b> 들어오는 경우는 입학으로 처리함).</p>	학적사항	2019년 02월 12일 □□초등학교 제6학년 졸업 2019년 03월 04일 ○○중학교 제1학년 입학 (2019년 07월 18일 면제) 2021년 08월 06일 ○○중학교 제3학년 재취학	특기사항	2019.07.18. 전 가족 일본 출국(부 파견 근무) 2019.09.01.-2021.07.30. 일본 ○○중학교 재학 2021.08.01. 전 가족 귀국(부 파견 종료)	<p>■ <b>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b></p> <p>☞ &lt;예시&gt; 학업을 중단(면제)하였다가 다시 들어온 경우</p> <table border="1" data-bbox="796 350 1735 521"> <tr> <td>학적사항</td> <td><b>2023년 02월 14일</b> □□초등학교 제6학년 졸업 <b>2023년 03월 02일</b> ○○중학교 제1학년 입학(<b>2023년 07월 18일</b> 면제) <b>2024년 09월 04일</b> ○○중학교 제2학년 재취학</td> </tr> <tr> <td>특기사항</td> <td><b>2023.07.18. 정당한 해외 출국으로 인한 면제</b></td> </tr> </table> <p>※ 의무교육대상자가 의무교육을 중단하였다가 의무교육연령 내에 다시 의무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학년, 학교 및 학교급을 달리하여도 재취학으로 처리함(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남은 시점까지 1학년도 처음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입학으로 처리함).</p>	학적사항	<b>2023년 02월 14일</b> □□초등학교 제6학년 졸업 <b>2023년 03월 02일</b> ○○중학교 제1학년 입학( <b>2023년 07월 18일</b> 면제) <b>2024년 09월 04일</b> ○○중학교 제2학년 재취학	특기사항	<b>2023.07.18. 정당한 해외 출국으로 인한 면제</b>		
		학적사항	2019년 02월 12일 □□초등학교 제6학년 졸업 2019년 03월 04일 ○○중학교 제1학년 입학 (2019년 07월 18일 면제) 2021년 08월 06일 ○○중학교 제3학년 재취학										
특기사항	2019.07.18. 전 가족 일본 출국(부 파견 근무) 2019.09.01.-2021.07.30. 일본 ○○중학교 재학 2021.08.01. 전 가족 귀국(부 파견 종료)												
학적사항	<b>2023년 02월 14일</b> □□초등학교 제6학년 졸업 <b>2023년 03월 02일</b> ○○중학교 제1학년 입학( <b>2023년 07월 18일</b> 면제) <b>2024년 09월 04일</b> ○○중학교 제2학년 재취학												
특기사항	<b>2023.07.18. 정당한 해외 출국으로 인한 면제</b>												
	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 ·외국인학교 전출·입 처리 (p.48)	<p>■ <b>문구(항목) 추가(기재요령)</b></p> <p>☞ 차. 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외국인학교 전출·입 처리 방법</p> <p>1) 국내학교에서 학력인정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외국인학교로 전출하거나 학력인정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외국인학교에서 국내학교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한국학교의 학적처리 절차에 준하여 처리 <b>하며, 학력인정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외국인학교에서 국내학교로 전입 시 학년배정은 '사'항의 '귀국 학생 등의 학적 처리 방법'에 준하여 처리한다.</b></p> <p>※ 학력인정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에는 채드웁 송도국제학교, 대구국제학교가 있으며, 학력인정 외국인학교에는 청라달튼외국인학교가 있음.</p>	<p>■ <b>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b></p> <p>☞ 가. 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외국인학교 <b>학적</b> 처리 방법</p> <p>1) 국내학교에서 학력인정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외국인학교로 전출하거나 학력인정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외국인학교에서 국내학교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한국학교의 학적처리 절차에 준하여 처리하며, 학력인정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외국인학교에서 국내학교로 전입 시 학년배정은 <b>'사'항의 '귀국 학생 등의 학적 처리 방법'에 준하여 처리한다.</b></p> <p>※ 학력인정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에는 채드웁 송도국제학교, 대구국제학교가 있으며, 학력인정 외국인학교에는 청라달튼외국인학교가 있음.</p>		<p>■ <b>문구(항목) 추가(기재요령)</b></p> <p>☞ 가. 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외국인학교 학적 처리 방법</p> <p>1) 국내학교에서 학력인정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외국인학교로 전출하거나 학력인정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외국인학교에서 국내학교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한국학교의 학적처리 절차에 준하여 처리하며, 학력인정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외국인학교에서 국내학교로 전입 시 학년배정은 <b>'사'항의 '귀국 학생 등의 학적 처리 방법'에 준하여 처리한다.</b></p> <p>※ 학력인정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에는 채드웁 송도국제학교, <b>칼빈메니토바국제학교</b>, 대구국제학교가 있으며, 학력인정 외국인학교에는 청라달튼외국인학교가 있음.</p>								

영역 (항목)	내용 (2024 페이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인적 · 학적 사항	재학생이 소년보호 기관에 입교한 경우 처리 (p.49)	전년도와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li> <li>☞ 4) 재학생이 소년보호기관(교과교육을 운영 하는 소년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u>소년분류심사원</u>)에 입교한 경우, <u>재적교</u>에서는 [참고 자료 5]를 참조하여 처리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li> <li>☞ 4) 재학생이 소년보호기관(<u>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u>)에 입교한 경우, 재적교에서는 [참고자료 5]를 참조하여 처리한다.</li> </ul>
	아동학대· 가정폭력 피해 학생의 비밀 처리 방법 (p.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li> <li>☞ 1) 아동학대·가정폭력 피해 학생이 주소지 외 지역에 취학(입학, 재입학, 전입학 및 편입학 포함)할 경우, 아동학대·가정폭력 관련 법률에 따라 우선적으로 취학을 지원하되, 아동학대 행위자, 가정폭력 가해자(친권자 포함)에게 학생이 전학 간 학교, 거주지, 연락처 등을 비밀로 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li> <li>※ 전입 <u>처리</u> 시 교육정보시스템에서 비밀전입여부에 체크처리를 하여 전송되는 학생자료 중 학부모서비스 신청정보를 제외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li> <li>☞ 1) <u>피해학생</u>이 주소지 외 지역에 취학(입학, 재취학, 전입학 및 편입학 포함)하는 경우, <u>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전학 간 학교, 거주지, 연락처 등을 가해자(친권자 포함)에게</u> 비밀로 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li> <li>※ 전입 처리 시 교육정보시스템에서 비밀전입여부에 체크처리를 하여 전송되는 학생자료 중 학부모서비스 신청정보를 제외함.</li> </ul>	
	아동학대· 가정폭력 발생 사실 입증 객관적인 자료 (p.49)	전년도와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li> <li>☞ 2) <u>피해학생</u>이 전학을 신청했을 시, 주소를 이전하지 않더라도(동일 지역 내 포함) 아동학대·가정폭력 발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받고 전입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한다.</li> <li>※ 객관적인 자료:가정폭력상담소 또는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에서 발급한 가정폭력피해 상담 사실확인서, <u>지방자치단체의</u> 취학지원 요청 공문과 학대피해아동 취학지원 요청서</li> </ul>	
학생미혼모의 위탁교육에 대한 학적 처리 방법 (p.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구(항목) 신설(기재요령)</li> <li>☞ <u>하. 학생미혼모의 위탁교육에 대한 학적 처리 방법</u></li> <li>1) <u>학생미혼모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교육 정보시스템에서 등록 시 위탁교육 기관명이 드러나지 않도록 교육구분 설정을 '기타'로 하여 등록한다.</u></li> <li>※ 2024학년도 이전의 내용은 '교육복지정책과 -6434(2023.10.10.)' 공문을 근거로 정정할 수 있음.</li> </ul>

영역 (항목)	내용 (2024 페이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인적 · 학적 사항	학생미혼모의 위탁교육에 대한 학적 처리 방법 (p.49)				※ 위탁교육기관의 활동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자료를 그대로 입력하되 학생미혼모의 위탁교육 기관명이 드러나지 않도록 봉사활동 실적외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과 수상경력의 '수여기관'에는 위탁교육 기관명을 재적으로 입력함.
	영재학교 재학 중 영재학교가 아닌 학교로 이동하는 경우 교육정보 시스템 처리 방법 (p.50)		전년도와 동일		■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 ☞ 2) 영재학교 재학 중 영재학교가 아닌 학교로 이동 하는 경우는 전출·입으로 처리하되, 학업성적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기재 경로〉 ▶ '전입교'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적-전입관리- 전입관리-전입학/편입학/재취학등록]에서 전입생으로 등록 및 자료 요청하며, 영재학교는 [학적-전출관리-전출관리-전출자료요청접수] 에서 전출생 자료 요청사항을 확인한 후 인적· 학적사항을 전송함.
출결 상황	특기사항 입력 내용 (p.51)		전년도와 동일		■ 문구(항목) 수정(훈령) ☞ ④ '특기사항'란에 결석사유 또는 개근 등 교육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내용을 학급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 훈령 제393·433호 (2·3학년) 제8조(출결상황) ④ '특기사항'란에 결석사유 또는 개근 등 교육 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내용을 학급 담임 교사가 입력한다. 특기사항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한다.

영역 (항목)	내용 (2024 페이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출결 상황	수업 일수 (p.52)	전년도와 동일	<b>■ 문구(항목) 수정(훈령)</b> ☞ 마. 재입학·전입학·복학한 학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수업일수가 당해 학교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미만이 될 경우에는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b>출석일수</b> 부족으로 수료 또는 졸업 인정이 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당해 학년도 재입학·전입학·복학이 불가능하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참조).			
	경조사 일수 (p.52)	전년도와 동일		<b>■ 문구(항목) 수정(훈령)</b> ☞ ※ 경조사 일수에 <b>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b>		
	출석인정 결석 (p.53)	전년도와 동일	<b>■ 문구(항목) 수정(훈령)</b> ☞ 9) 경찰청 「소년업무규칙」 제31조부터 제33조에 따른 <b>경찰관서의</b>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b>■ 문구(항목) 수정(훈령)</b> ☞ 9) 시·도경찰청 「소년업무규칙」에 따른 경찰관서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b>■ 문구(항목) 신설(훈령)</b> ☞ 10)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			
				<b>■ 문구(항목) 신설(훈령)</b> ☞ 11)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직에 선출되어 의정활동(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당일 참석)을 사유로 수업일수의 10% 이내에서 결석하는 경우		
	질병으로 인한 결석 (p.53)	전년도와 동일		<b>■ 문구(항목) 수정(훈령)</b> ☞ 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b>결석 신고서</b> 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b>결석 신고서</b> 를 <b>결석한 날로부터 5일</b>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전년도와 동일		<b>■ 문구(항목) 수정(훈령)</b> ☞ 3)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b>방송·정보통신매체</b> 를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영역 (항목)	내용 (2024 페이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출결 상황	질병으로 인한 결석 (p.53)	전년도와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구(항목) 수정(훈령)</li> <li>☞ 4)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 먼지와 관련된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b>결석 신고서</b>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구(항목) 위치 이동(훈령)</li> <li>☞ 5)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만성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b>결석계</b>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b>( 6) 하단으로 위치 이동)</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구(항목) 수정(훈령)</li> <li>☞ 5)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만성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b>결석 신고서</b>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구(항목) 신설(훈령)</li> <li>☞ 6) 환경부로부터 <b>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b></li> <li>※ 4)~6)의 경우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구(항목) 수정(훈령)</li> <li>☞ 6) 환경부로부터 <b>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 증명서</b>를 발급받은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b>결석 신고서</b>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li> <li>※ 4)~6)의 경우 <b>결석 신고서</b>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b>의사의 진단서(소견서)</b>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li> </ul>		
기타 결석 (p.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구(항목) 신설(훈령)</li> <li>☞ 3)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에 따라 결석한 경우 가) 공직에 선출되어 <b>의정활동(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당일 참석)을 사유로 수업일수의 10%를 초과하여 결석한 경우</b> 나) 후보등록자 본인이 <b>선거운동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b> 다) <b>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으로서 정당활동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b></li> </ul>	
결과의 정의 (p.54)	전년도와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구(항목) 수정(훈령)</li> <li>☞ 다. 결과: 수업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b>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b>한 경우</li> </ul>	

영역 (항목)	내용 (2024 페이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출결 상황	결과의 정의 (p.57)		전년도와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구(항목) 수정(해설)</li> <li>☞ 마. '결과'는 수업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하거나 학교장이 정한 시각 이후에 수업에 참여한 경우, <b>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b> 등을 말한다.</li> </ul>
	횡수가 많은 단기결석· 지각·조퇴· 결과 (p.57)		전년도와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구(항목) 수정(해설)</li> <li>☞ 바. '특기사항'에는 질병·<b>미인정</b>으로 인한 장기결석, 기타결석의 사유 등을 입력한다.</li> <li>※ <b>횡수가 많은 단기결석·지각·조퇴·결과</b>의 경우 사유를 입력할 수 있음.</li> </ul>
	2·3학년 학생의 학교폭력 조치사항 입력 방법 (p.57)		전년도와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구(항목) 삭제(해설)</li> <li>☞ 사. &lt;삭제&gt;</li> </ul> <div style="border: 1px dashed red; padding: 5px;"> <p><b>[2·3학년 학생의 학교폭력 조치사항 입력]</b></p> <p>사. '특기사항'에는 <b>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b>에서 결정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제1항제4호(사회봉사), 제5호(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출석정지)에 따른 조치사항을 조치결정 일자(교육지원청 내부결재일)와 함께 결정 즉시 입력한다.</p> <p>※ 조치결정 일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요청에 대해 교육장이 조치 결정한 날 (교육지원청 내부결재일)을 의미함.</p> <p>※ 행정심판·소송이 청구된 경우에는 조치사항을 먼저 입력하고, 향후 조치가 변경될 경우 이를 수정하되, 최초 조치결정 일자: 변경하지 않음.</p> <p>※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적-출결관리-출결관리-출결특기사항등록]에서 해당학생에 대해 '특기사항'에 입력함.</p> </div>

영역 (항목)	내용 (2024 페이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출결 상황	수료기준 (p.58)	전년도와 동일	<b>■ 문구(항목) 수정(해설)</b> ☞ - 다만, 학생과 학부모가 재취학·전입학을 요구할 경우, 당해 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생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재취학·전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이때 학교에서는 허가에 앞서 학생, 학부모에게 당해 학년도에는 <b>출석일수</b> 부족으로 수료 또는 졸업이 되지 않음을 정확히 주지 및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			
	상위법령에 따른 출석인정 (p.58)	전년도와 동일		<b>■ 문구(항목) 수정(해설)</b> ☞ 1) 별표 8 2조 나목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상위 법령에 따라 출석 인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b>출석인정 결석</b> 으로 처리할 수 있다.		
	법원소년부의 조사·심리 기간과 소년분류 심사원에서의 재소기간 출석인정 (p.58)	전년도와 동일	<b>■ 문구(항목) 수정(해설)</b> ☞ 4) 법원소년부의 조사·심리 기간과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재소기간(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거나 유치된 소년의 위탁기간)은 재적학교에서 <b>출석 인정</b> 으로 처리한다(「소년법」 제13조, 제18조,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1조(학적 관리)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상담조사 등) 제2항, 제85조(대안교육 대상자의 출석일수 인정) 제1항).		<b>■ 문구(항목) 수정(해설)</b> ☞ 4) 법원소년부의 조사·심리 기간과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재소기간(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거나 유치된 소년의 위탁기간)은 재적학교에서 <b>출석인정 결석</b> 으로 처리한다(「소년법」 제13조, 제18조,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1조(학적 관리)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상담조사 등) 제2항, 제85조(대안교육 대상자의 출석일수 인정) 제1항).	
	(국제 경기 대회와 국가 대표 훈련에 참가하는) 학생선수 출결처리 방법 (p.58)	전년도와 동일	<b>■ 문구(항목) 수정(해설)</b> ☞ 5) 학교장은 학생선수가 국가대표 자격으로 출전하는 국제경기대회와 국가대표 훈련에 참가할 경우, 관련 공문을 근거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b>출석인정</b> 으로 처리하고 관련 내용을 교육청에 보고한다.		<b>■ 문구(항목) 수정(해설)</b> ☞ 5) 학교장은 학생선수가 국가대표 자격으로 출전하는 국제경기대회와 국가대표 훈련에 참가할 경우, 관련 공문을 근거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b>출석인정 결석</b> 으로 처리하고 관련 내용을 교육청에 보고한다.	
	교외 체험 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조건 (p.59)	전년도와 동일		<b>■ 문구(항목) 수정(해설)</b> ☞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del>경계</del> '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영역 (항목)	내용 (2024 페이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출결 상황	보호관찰소에서 명한 사회봉사, 특별교육의 출석인정 (p.59)	전년도와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구(항목) 수정(해설)</li> <li>☞ 8) 보호관찰소에서 명한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등의 수강기간, 대안교육 기간은 재적학교에서 <b>출석인정</b>으로 처리한다(「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제1항제2호부터 제5호, 제2항제1호부터 제2호, 제32조의2(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등) 제1항, 제3항,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대안교육 및 비행예방 등) 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대안교육 대상자의 출석 인정)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특별준수사항) 제2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구(항목) 수정(해설)</li> <li>☞ 8) 보호관찰소에서 명한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등의 수강기간, 대안교육 기간은 재적학교에서 <b>출석인정 결석</b>으로 처리한다(「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제1항제2호부터 제5호, 제2항제1호부터 제2호, 제32조의2(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등) 제1항, 제3항,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대안교육 및 비행예방 등) 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대안교육 대상자의 출석일수 인정)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특별준수사항) 제2호).</li> </ul>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제4호, 제5호의 출석인정 (p.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구(항목) 신설(해설)</li> <li>☞ 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제4호와 제5호에 따른 사회봉사와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인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구(항목) 수정(해설)</li> <li>☞ 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제4호와 제5호에 따른 '사회봉사'와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로 인한 결석은 <b>출석인정 결석</b>으로 처리한다.</li> </ul>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결석 기간 산정 (p.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구(항목) 수정(해설)</li> <li>☞ 9) <u>경조사로 인한 출석 인정 결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토요일, 공휴일, 재량휴업일로 인하여 분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할처리 불가). 사망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날부터 처리할 수 있다.</u></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구(항목) 수정 및 추가(해설)</li> <li>☞ 10)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b>전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b> 사망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날부터 처리할 수 있다.</li> <li>※ <u>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 기간 산정 시 토요일, 공휴일, 재량휴업일은 불포함하며 해당 기간 내에서 학생은 상황에 따라 출석할 수 있음.</u></li> </ul>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의 출석인정 (p.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구(항목) 수정(해설)</li> <li>☞ 10) 학교장은 초·중·고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월 1일 결석)에는 <b>별표 8 '2조 나목 7)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b>로 보아 출석으로 인정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구(항목) 수정(해설)</li> <li>☞ 10) 학교장은 초·중·고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월 1일 결석)에는 별표 8 '2조 나목 7)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보아 출석으로 인정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구(항목) 수정(해설)</li> <li>☞ 11) 학교장은 초·중·고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월 1일 결석)에는 별표 8 '2조 나목 7)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보아 <b>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b></li> <li>※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 시(지각, 조퇴, 결과 포함) 출석 인정을 위해 담임교사 의견서, 학부모 의견서 등을 요구하는 것 외의 의료적 확인(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을 요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함.</li> </ul>	

영역 (항목)	내용 (2024 페이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출결 상황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의 출석인정 (p.59)	<p>※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 시(지각, 조퇴, 결과 포함) 출석 인정을 위해 담임교사 의견서, 학부모 의견서 등을 요구하는 것 외의 의료적 확인(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을 요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함.</p> <p>※ 생리인정결석 시 지각, 조퇴, 결과 3회를 1일로 산정하는 등의 출결 산정기준은 월 1일의 범위 내에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 학교장이 정함.</p> <p>※ 출석인정 시 성적은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b>따라</b> 학교장이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 관리규정'에 기준을 정하여 결정함.</p>	<p>※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 시(지각, 조퇴, 결과 포함) 출석 인정을 위해 담임교사 의견서, 학부모 의견서 등을 요구하는 것 외의 의료적 확인(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을 요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함.</p> <p>※ <b>생리통으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 시</b> 지각, 조퇴, 결과 3회를 1일로 산정하는 등의 출결 산정기준은 월 1일의 범위 내에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 학교장이 정함.</p> <p>※ 출석 인정 시 성적은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 관리규정'에 기준을 정하여 결정함.</p>	<p>※ 생리통으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 시 지각, 조퇴, 결과 3회를 1일로 산정하는 등의 출결 산정기준은 월 1일의 범위 내에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 학교장이 정함.</p> <p>※ 출석 인정 시 성적은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 관리규정'에 기준을 정하여 결정함.</p>	
	학교폭력 대책심의 위원회 출석 시 출결처리 (p.60)	<p>■ 문구(항목) 신설(해설)</p> <p>☞ 11) 학교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같은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피·가해 학생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의견진술 절차 등의 사유로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출석으로 인정한다.</p>		<p>■ 문구(항목) 수정(해설)</p> <p>☞ 12) 학교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같은법 제17조제8항에 따라 피·가해 학생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의견진술 절차 등의 사유로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p>	
	투표 참여 학생의 출석인정 범위 (p.60)	<p>■ 문구(항목) 신설(해설)</p> <p>☞ 13)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 출석 인정 범위는 투표에 직접 필요한 시간으로 하며, '직접 필요한 시간'에는 투표에 소요된 시간에 당일 왕복 소요 시간을 포함할 수 있다.</p>		<p>■ 문구(항목) 수정 및 추가(해설)</p> <p>☞ 14)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 출석 인정 범위는 투표에 직접 필요한 시간으로 하며, '직접 필요한 시간'에는 투표에 소요된 시간에 당일 왕복 소요 시간을 포함할 수 있다.</p> <p>※ 사전투표의 경우,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학교 후, 주말 등)에서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안내하고, 이로 인한 결석(지각, 조퇴 등 포함)은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음.</p>	
	의정활동을 사유로 수업일수의 10%를 초과하여 결석하는 경우의 처리 (p.60)			<p>■ 문구(항목) 신설(해설)</p> <p>☞ 15) 공직에 선출된 자의 의정활동(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당일 참석)을 사유로 수업일수의 10%를 초과하여 결석하는 경우, 후보등록자 본인의 선거운동, 정당발기인 또는 당원으로서의 정당활동을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에 한해 기타결석으로 처리하고 '특기사항'란에 '교외활동(0일)'로 사유를 입력한다. 단, 정치활동 참여 관련 사항은 출결특기사항 외 학교생활기록부 어디에도 기재하지 않는다.</p>	
	결석 신고서 제출 기한 (p.60)	<p>■ 문구(항목) 신설(해설)</p> <p>☞ 13) 별표 8 '2조 다목'의 결석계를 제출하는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라고 하는 것은 '결석을</p>	<p>■ 문구(항목) 수정(해설)</p> <p>☞ 14) 별표 8 '2조 다목'의 결석계를 제출하는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라고 하는 것은 '결석을</p>	<p>■ 문구(항목) 수정(해설)</p> <p>☞ 16) 별표 8 '2조 다목'의 결석계를 제출하는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라고 하는 것은</p>	<p>■ 문구(항목) 수정(해설)</p> <p>☞ 16) 별표 8 '2조 다목'의 결석 신고서를 제출하는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라고 하는 것은</p>

영역 (항목)	내용 (2024 페이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출결 상황	결석 신고서 제출 기한 (p.60)	<b>시작한 날'로부터 기한(5일 또는 부득이한 경우 학교장이 정한 기한) 내를 의미한다.</b>	시작한 날'로부터 기한(5일 또는 부득이한 경우 학교장이 정한 기한) 내를 의미한다.	'결석을 시작한 날'로부터 기한(5일 또는 부득이한 경우 학교장이 정한 기한) 내를 의미한다.	'결석을 시작한 날'로부터 기한(5일 또는 부득이한 경우 학교장이 정한 기한) 내를 의미한다.
	재판 결과 최종 무죄판결시 출결 및 성적 처리방법 (p.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구(항목) 추가(해설)</li> <li>☞ 14) 별표 8 '2조 라목' 5)의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 있는 사유'란 범법행위의 피의자로 수사기관(경찰, 검사)의 수사 대상이 된 경우를 말한다.</li> <li>※ 단, 재판 결과 최종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항소심 또는 상고심이 진행 중인 경우 제외)에는 '출석 인정 결석'으로 변경하여 입력함(지필평가 기간 제외, 성적은 미변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구(항목) 수정(해설)</li> <li>☞ 15) 별표 8 '2조 라목' 5)의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 있는 사유'란 범법행위의 피의자로 수사기관(경찰, 검사)의 수사 대상이 된 경우를 말한다.</li> <li>※ 단, 재판 결과 최종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항소심 또는 상고심이 진행 중인 경우 제외)에는 '출석 인정 결석'으로 변경하여 입력함(지필평가 기간 제외, 성적은 미변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구(항목) 수정(해설)</li> <li>☞ 17) 별표 8 '2조 라목' 5)의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 있는 사유'란 범법행위의 피의자로서 수사기관(경찰, 검사)의 수사 대상이 된 경우를 말한다.</li> <li>※ 단, 재판 결과 최종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항소심 또는 상고심이 진행 중인 경우 제외)에는 '출석 인정 결석'으로 변경하여 입력함(지필평가 기간 제외, 성적은 미변경).</li> </ul>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출석인정 결석 처리 (p.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구(항목) 수정(해설)</li> <li>☞ 1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피해학생의 보호) 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구(항목) 수정(해설)</li> <li>☞ 1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피해학생의 보호) 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구(항목) 수정(해설)</li> <li>☞ 1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피해학생의 보호) 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구(항목) 수정(해설)</li> <li>☞ 1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피해학생의 보호) 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li> </ul>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p.61)		전년도와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구(항목) 수정 및 추가(해설)</li> <li>☞ 2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항제6호의 출석 정지 기간은 미인정 결석에 해당된다.</li> <li>※ 1학년 학생은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에 입력하고, 2·3학년 학생은 출결상황 '특기사항'에 사유를 입력함.</li> </ul>
	소속 학교 에서 실시한 원격 수업 수강 학생의 출결 등 처리 (p.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구(항목) 신설(해설)</li> <li>☞ 라. 소속 학교에서 실시한 원격수업(방송·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수업) 수강학생의 출결 등 처리</li> <li>1) 학년 초(또는 학기 초) 교과별(학년별) 협의회 등에서 원격수업의 출결·평가·학교생활기록부 관리 계획을 마련하고, 원격수업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li> <li>* 단위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학교교육과정위원회 등과 통합 운영 가능</li> <li>※ 학년 초(또는 학기 초) 계획 수립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학교별 상황과 여건에 따라 학기 중 계획 수립 가능</li> </ul>		

영역 (항목)	내용 (2024 페이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소속 학교에서 실시한 원격 수업 수강 학생의 출결 등 처리 (p.61)		<p>2) 출결 처리: 출결 확인은 원격수업의 유형과 관계없이 교과담당교사가 당일 매 교시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매 교시별 출석확인이 어려운 경우 콘텐츠 활용과 과제 수행 중심 수업의 출결은 3일 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당일 최종 확인하여 기록할 수 있다. 다만,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서 접속불량 등으로 대체학습을 제공한 경우 3일 내 최종 확인하여 기록할 수 있다. 출결 마감은 학급 담임교사가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월 단위로 할 수 있다.</p> <p>※ 학교장이 학교 여건 등을 감안하여 출결(마감) 처리 시기 등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할 수 있음.</p> <p>※ 인터넷 및 컴퓨터 사용 곤란 등 물리적 환경에 따라 원격수업 참여가 불가한 학생에 한하여, 대체학습 이행 결과를 근거로 출석 처리 가능</p> <p>※ 실시간 조·종례 운영은 교육정보시스템의 출결 관리에 반영하지 않고 별도 운영</p> <p style="text-align: center;">〈원격수업 유형별 출석 확인 방법(예시)〉</p> <p>* 접속불량 등으로 대체학습을 제공한 경우, 3일 내 최종 확인하여 기록함.</p> <p>3) 평가 결과 처리: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원격수업에서 학생의 수행 과정 및 결과를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하여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을 실시하고, 세부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지침」 별표 9를 참조한다.</p> <p>※ 지필평가는 반드시 등교하여 실시함.</p> <p>4)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처리: 원격수업에서 교사가 학생의 수행 과정과 결과를 직접 관찰·확인한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으며, 직접 관찰·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재할 수 없다. 다만, 원격수업에서 직접 관찰·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도 등교수업과 연계하여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한 학생 활동을 기재할 수 있다.</p>		
출결 상황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인정 결석 처리 (p.64)		전년도와 동일		<p>■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p> <p>☞ 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 치료를 받은 교육기간은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p>
	장기 결석의 범위 및 개인 정보 보호가 필요한 질병 결석 사유 처리 방법 (p.64)	<p>■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p> <p>☞ 가. 특기사항에 입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p> <p>1) 장기결석: 결석 종류별로 사유를 입력함.</p> <p>2) 기타결석: 1일이라도 사유를 입력함.</p> <p>3) 단기결석: 횟수가 많을 경우 이를 누계하여 주된 사유를 입력할 수 있음.</p> <p>4) 지각·조퇴·결과: 입력하지 않으나 반복적인 지각·조퇴·결과의 경우 사유를 입력할 수 있음.</p> <p>〈예시〉 감기로 인한 질병조퇴(13회), 부 간병으로 인한 기타조퇴(10회), 병원 정기진료로 인한 질병지각(15회)</p> <p>※ '장기결석' 은 같은 종류로 연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경우로, 그 기간은 7일 내외의 범위(최대 3일의 범위에서 조정 가능)에서 학교장이 정함.</p> <p>※ 입력할 수 있는 반복적인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학교장이 정함.</p> <p>※ 학교장이 정한 기간의 장기결석 중 질병결석인 경우에도 사유를 입력하되,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질병의 경우에는 <b>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b> 사유를 입력하지 않음.</p>			<p>■ 문구(항목) 수정 및 이동(기재요령)</p> <p>☞ 가. 특기사항에 입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p> <p>1) 장기결석: 결석 종류별로 사유를 입력함.</p> <p>※ '장기결석' 은 같은 종류로 연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경우로, 그 기간은 7일 내외의 범위(최대 3일의 범위에서 조정 가능)에서 학교장이 정함.</p> <p>※ 학교장이 정한 기간의 장기결석 중 질병결석인 경우에도 사유를 입력하되,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질병의 경우에는 <b>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b> 사유를 입력하지 않음.</p> <p>2) 기타결석: 1일이라도 사유를 입력함.</p>

영역 (항목)	내용 (2024 페이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장기 결석의 범위 및 개인 정보 보호가 필요한 질병 결석 사유 처리 방법 (p.64)					3) 단기결석: 횟수가 많을 경우 이를 누계하여 주된 사유를 입력할 수 있음. 4) 지각·조퇴·결과: 입력하지 않으나 <b>횟수가 많은</b> 지각·조퇴·결과의 경우 사유를 입력할 수 있음. 〈예시〉 감기로 인한 질병조퇴(13회), 부 간병으로 인한 기타조퇴(10회), 병원 정기진료로 인한 질병지각(15회) ※ 입력할 수 있는 <b>단기결석·지각·조퇴·결과</b> 횟수는 학교장이 정함.
출결 상황	2·3학년 학생의 학교폭력 조치사항 입력 방법 (p.67)	전년도와 동일				<b>■ 문구(항목) 위치 이동(기재요령)</b>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een; padding: 5px; margin: 5px 0;"> <b>[2·3학년 학생의 학교폭력 조치사항 입력]</b>  <b>〈예시〉 학교폭력 관련 조치를 받은 경우(출석 인정 결석 처리: 제4호, 제5호)</b>  <b>〈예시 생략〉</b> </div>
	학생선수 출결처리 방법 (p.67)	<b>■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b> ☞ 1) 별표 8 '제2조 나목'의 3)과 관련하여 학교장이 학생선수의 출석 인정을 허가할 경우에는 학습권 보장 및 인권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10일, 중학교 15일, 고등학교 30일 범위 내에서 허용할 수 있으며, 국가대표는 대한체육회에서 인정하는 관련 공문을 근거로 허용 일수를 초과할 수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대한체육회장)이 인정하는 국가대표선수로서 주요 국제대회 및 국가대표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와 전국(소년)체육대회(지역 예선 포함)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초등학교 10일, 중학교 15일, 고등학교 30일 초과하여 허용 가능하다. ... (중략) ... 2)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정상적인 학교생활	<b>■ 문구(항목) 추가 및 수정(기재요령)</b> ☞ *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함(「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4호). 1) 별표 8 '제2조 나목'의 3)과 관련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생선수가 대회 및 훈련 참가를 위해 결석한 경우,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정상적인 학교생활 참여를 위해 초등학교 5일, 중학교 12일, 고등학교 25일 범위 내에서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다만, 전국(소년)체육대회(지역 예선 포함)에 참가하는 경우는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초등학교 5일, 중학교 12일, 고등학교 25일을 초과하여 허용 가능하다. ... (중략) ... (다) 학생선수에 대한 당해 학년도 출석인정 결석 허용 일수(초등학교 5일, 중학교 12일, 고등학교 25일)	<b>■ 문구(항목) 수정/추가/삭제(기재요령)</b> ☞ *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함(「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4호). 1) 별표 8 '제2조 나목'의 3)과 관련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생선수가 대회 및 훈련 참가를 위해 결석한 경우,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정상적인 학교생활 참여를 위해 초등학교 20일, <b>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b> 범위 내에서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다만, <b>국가대표 선수로서 주요 국제대회 및 국가대표 훈련**</b> 과 전국(소년)체육대회(지역 예선 포함)에 참가하는 경우는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b>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b> 을 초과하여 허용 가능하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4의2. 국가대표	<b>■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b> ☞ *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함(「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4호). 1) 별표 8 '제2조 나목'의 3)과 관련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생선수가 대회 및 훈련 참가를 위해 결석한 경우,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정상적인 학교생활 참여를 위해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 범위 내에서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다만, 국가대표*선수로서 주요 국제대회 및 국가대표 훈련**과 전국(소년)체육대회(지역 예선 포함)에 참가하는 경우는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을 초과하여 허용 가능하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4의2. 국가대표	

영역 (항목)	내용 (2024 페이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출결 상황	학생선수 출결처리 방법 (p.67)	<p>참여를 위해 대회 및 훈련 참가를 초등학교 10일, 중학교 15일, 고등학교 30일 범위 내에서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p> <p>...(중략)...</p> <p>※ 학생선수에 대한 당해 학년도 출석 인정 결석 허용일수(<b>초등학교 10일, 중학교 15일, 고등학교 30일</b>) 적용 방법은 출석 인정 결석 처리를 위한 일수 산정 방법에 한정되는 것으로 진급·수료·졸업을 위한 <b>출석일수</b> 산정과는 무관함.</p>	<p>적용 방법은 출석 인정 결석 처리를 위한 일수 산정 방법에 한정되는 것으로 진급·수료·졸업을 위한 출석일수 산정과는 무관함.</p>	<p><b>선수단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확정한 사람을 말한다.</b></p> <p><b>** 대한체육회에서 인정하는 관련 공문(기간, 명단 명시)을 근거로 하며 꿈나무, 청소년대표, 후보자 훈련은 국가대표 자격으로 실시하는 훈련이 아니므로, 출석인정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음.</b></p> <p><b>※ 학생선수 훈련 및 대회 참가시 교외체험학습 등으로 출석인정 처리 불가</b></p> <p>...(중략)...</p> <p>(나) 지각·조퇴·결과의 경우: <b>6시간(수업시간)</b> 누적 시 1일로 간주          &lt;예시&gt; 학생선수가 조퇴 4시간, 결과 4시간, 지각 4시간을 한 경우 합산이 12시간이 되므로 2일로 간주하여 허용일수에서 2일 제외함.          (다) 학생선수에 대한 당해 학년도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b>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b>)적용 방법은 출석 인정 결석 처리를 위한 일수 산정 방법에 한정되는 것으로 진급·수료·졸업을 위한 출석일수 산정과는 무관함.</p>	<p>선수단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확정한 사람을 말한다.</p> <p>** 대한체육회에서 인정하는 관련 공문(기간, 명단 명시)을 근거로 하며 꿈나무, 청소년대표, 후보자 훈련은 국가대표 자격으로 실시하는 훈련이 아니므로, 출석인정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음.</p> <p>※ 학생선수 훈련 및 대회 참가시 교외체험학습 등으로 출석인정 처리 불가</p> <p>...(중략)...</p> <p><b>나) 대회 또는 훈련 참가로 인한</b> 지각·조퇴·결과의 경우: 6시간(수업시간) 누적 시 1일로 간주          &lt;예시&gt; 학생선수가 <b>대회 또는 훈련 참가로</b> 조퇴 4시간, 결과 4시간, 지각 4시간을 한 경우 합산이 12시간이 되므로 2일로 간주하여 허용일수에서 2일 제외함.          (다) 학생선수에 대한 당해 학년도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 적용 방법은 출석 인정 결석 처리를 위한 일수 산정 방법에 한정되는 것으로 진급·수료·졸업을 위한 출석일수 산정과는 무관함.</p>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 출결처리 (p.69)	<p>■ <b>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b></p> <p>☞ 나)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에 한하여 질병결석으로 인정한다.</p> <p>※ 국립환경과학원·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에어코리아(<a href="http://www.airkorea.or.kr">http://www.airkorea.or.kr</a>)나 <b>우리동네대기정보(앱)</b>를 통해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및 예보 확인 가능함.</p> <p>※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를 제출하여</p>	<p>■ <b>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b></p> <p>☞ 나) 등교시간대 거주지나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또는 <b>초미세먼지</b> 농도가 '나쁨'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에 한하여 질병결석으로 인정한다.</p> <p>※ 국립환경과학원·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에어코리아(<a href="http://www.airkorea.or.kr">www.airkorea.or.kr</a>) 등을 통해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및 예보 확인 가능함.</p> <p>※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p>	<p>■ <b>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b></p> <p>☞ 나) 등교시간대 거주지나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에 한하여 질병결석으로 인정한다.</p> <p>※ 국립환경과학원·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에어코리아(<a href="http://www.airkorea.or.kr">www.airkorea.or.kr</a>) 등을 통해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및 예보 확인 가능함.</p> <p>※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b>결석 신고서</b>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b>결석 신고서</b></p>	

영역 (항목)	내용 (2024 페이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b>의사의 진단서(소견서)</b> 로 해당 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출결 상황	소년보호기관 출석인정 결석 처리 (p.69)	전년도와 동일	<p>■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p> <p>☞ 1) 소년보호기관별 수업일수 인정 여부 처리는 [참고자료 5] '소년보호기관 관련 처리'를 참조한다.</p> <p>2) 재학 중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거나 유치된 소년의 위탁 또는 조사를 위하여 출석하는 기간과 소년원 송치에 의한 1개월 이내의 소년원 교육기간은 재적학교에서 <b>'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b>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p> <p>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판사 또는 검사가 의뢰한 대안교육 대상 소년이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정해진 대안교육과정(비행예방 및 재범방지 또는 사회적응을 위한 체험과 인성위주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을 재적학교에서 <b>'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b>(«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p>		<p>■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p> <p>☞ 1) <b>&lt;전년도와 동일&gt;</b></p> <p>2) 재학 중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거나 유치된 소년의 위탁 또는 조사를 위하여 출석하는 기간과 <b>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보호처분 8호) 기간은</b> 재적학교에서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p> <p>3) <b>&lt;전년도와 동일&gt;</b></p>
	가정폭력 또는 아동학대 피해학생의 위탁학생 관리 (p.69)	전년도와 동일	<p>■ 문구(항목) 수정 및 추가(기재요령)</p> <p>☞ 6) 「아동복지법」 및 「<b>아동학대처벌법</b>」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 또는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해 분리보호된 학생을 보호하는 경우 보호기간에 대해 위탁학생으로 관리한다.</p> <p>※ <b>해당 학생의 학습 결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 등에 따라 학적 변동 없이 교육감(또는 교육장)이 지정하는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음('학대피해학생 등교학습 지원 방안 시행 안내 및 협조 요청',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4140('21.10.29.)참조).</b></p>		<p>■ 문구(항목) 추가(기재요령)</p> <p>☞ 6) 「아동복지법」 및 「<b>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b>」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 또는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해 분리보호된 학생을 보호하는 경우 보호기간에 대해 위탁학생으로 관리한다.</p> <p>※ 해당 학생의 학습 결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 등에 따라 학적 변동 없이 교육감(또는 교육장)이 지정하는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음('학대 피해 학생 등교학습 지원 방안 개선(안) 시행 안내',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2613('23.4.10.) 참조).</p> <p>※ 위탁교육기관의 활동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자료를 그대로 입력하되 학대 피해학생의 위탁교육 기관명이 드러나지 않도록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과 수상경력의 '수여기관'에는 위탁교육 기관명을 재적교로 입력함('학대 피해학생 등교학습 지원 방안 개선(안) 시행 안내',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2613('23.4.10.) 참조).</p>

영역 (항목)	내용 (2024 페이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출결 상황	가정폭력 또는 아동학대 피해학생의 위탁학생 관리 (p.69)				<p>〈기재 경로〉</p> <p>▶ 위탁학생 등록 시 '교육구분' 설정에서 대안 교육 위탁교육기관은 '대안교육위탁기관'으로 병원학교·원격수업기관은 '병원학교' 또는 '원격수업'으로, 방송·정보통신매체는 '원격수업'으로, 나머지(<b>학생미혼모 포함</b>)는 '기타'로 등록함.</p>
	위탁 학생 처리 방법 (p.70)	<p>■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p> <p>☞ 7) 소년보호기관, 대안교육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업과정학생, 건강장애학생, 방송·정보통신매체 등의 학적관리 및 출석일수, 교과 성적, 비교과 영역의 인정 여부는 표와 같다.</p>	<p>■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p> <p>☞ 7) 소년보호기관, 대안교육 <b>위탁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 병원학교·원격수업기관</b>, 방송·정보통신매체 등의 학적관리 및 <b>수업일수</b>, 교과 성적, 비교과 영역의 인정 여부는 표와 같다.</p>		
	출석인정 결석의 사유 입력 (p.70)				<p>■ 문구(항목) 신설(기재요령)</p> <p>☞ ○ <b>출석인정 결석은 특기사항에 사유를 입력하지 않음(단, 2~3학년의 경우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은 입력함).</b></p>
수상 경력	교내상 입력 영역 및 중복입력 금지 (p.71)	<p>■ 문구(항목) 수정(해설)</p> <p>☞ 다. 교내상은 학교생활기록부 수상경력에만 입력하며, 수상경력 이외의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는다(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b>특기사항</b>', 교과학습발달상황의 '<b>세부능력 및 특기사항</b>', 자유학기활동상황의 '<b>특기사항</b>',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p> <p>※ 시상 계획이 있는 각종 교내 대회와 행사의 준비과정 및 참가 사실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p>	<p>■ 문구(항목) 수정(해설)</p> <p>☞ 다. 교내상은 학교생활기록부 수상경력에만 입력하며, 수상경력 이외의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는다(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b>특기사항</b>', 교과학습발달상황의 '<b>세부능력 및 특기사항</b>', 자유학기활동상황의 '<b>특기사항</b>',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p> <p>※ 시상 계획이 있는 각종 교내 대회와 행사의 준비과정 및 참가 사실은 <b>수상여부와 관계없이</b>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p>		
	참가대상 (참가인원) 기준 (p.73)	전년도와 동일	<p>■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p> <p>☞ 나. 참가대상과 참가인원은 <b>실제</b> 대회에 참가한 대상과 <b>참가인원</b>으로 하고, 대회의 실시결과 등을 근거로 입력한다.</p> <p>1) 참가인원의 입력 기준은 대회인 경우 대회참가인원 기준으로, 포상대상자로 추천인 경우 <b>추천대상인원</b> 기준으로 적용함.</p>		

영역 (항목)	내용 (2024 페이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수상 경력	수상경력에 반영하지 않는 내용 (p.75)	전년도와 동일		<b>■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b> ☞ 나. 학년·학급 단위의 단체수상(체육대회 응원상, 환경미화상, 합창대회 등)이나 <b>당선증·임명장·인증서</b> 는 입력하지 않는다.	
	위탁교육기관 에서 받은 상의 수여기관 입력 (p.75)	전년도와 동일		<b>■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b> ☞ 라. <b>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공동교육과정 수강 학생과 국내학교 간 교환학생(도·농 교류 등)이</b> 위탁기관 및 교환학교에서 받은 상은 교내상으로 입력할 수 있다. ※ 당해 학교의 상징번호 자동채번 설정과 관계없이 직접 입력할 수 있는 [학생생활-수상경력-학급별 수상관리의 {학급별수상관리} 탭에서 등록하며, '수여기관'에는 위탁기관장을 입력함. <b>단, 학대 피해학생과 학생미혼모의 경우 위탁교육 기관명이 드러나지 않도록 '수여기관'에 재적교 학교장을 입력함('학대 피해학생 등교학습 지원 방안 개선(안) 시행 안내',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2613('23.4.10.) 참조).</b>	
	유의사항 (p.75)	<b>■ 문구(항목) 신설 및 수정(기재요령)</b> ☞ ○ <b>'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유의사항'에서 금지하는 실적을 근거로 한 수상실적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음.</b> ○ 야간자율학습과 관련된 내용을 근거로 교내상을 시상한 경우 기재하지 않음. ○ 학교교육계획서 내 시상 계획이 있는 대회와 행사는 '수상경력' 이외의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할 수 없음. ○ 학교교육계획서 내 시상 계획이 있는 대회명과 행사명은 '수상경력'란에만 입력하고, 이와 관련한 활동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할 수 없음(시상 계획이 없는 대회라도 '대회' 명칭은 입력할 수 없음). ○ <b>상급학교 진학 시 수상경력은 학생별 한 학기에 한 개씩만 제공함.</b>	<b>■ 문구(항목) 삭제(기재요령)</b> ☞ ○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유의사항'에서 금지하는 실적을 근거로 한 수상실적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음. ○ 야간자율학습과 관련된 내용을 근거로 교내상을 시상한 경우 기재하지 않음. ○ <b>(학교교육계획서 내 시상 계획이 있는 대회와 행사는 '수상경력' 이외의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할 수 없음.)</b> ○ 학교교육계획서 내 시상 계획이 있는 대회명과 행사명은 '수상경력'에만 입력하고, 이와 관련한 활동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할 수 없음(시상 계획이 없는 대회라도 '대회' 명칭은 입력할 수 없음). ○ 상급학교 진학 시 수상경력은 학생별 한 학기에 한 개씩만 제공함.		

영역 (항목)	내용 (2024 페이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학교 폭력 조치 상황 관리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1학년) (p.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구(항목) 신설(훈령)</li> <li>☞ 제16조의2(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한다. <i>&lt;해설, 기재요령 내용 생략&gt;</i></li> </ul>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2·3학년) (p.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영역(인적·학적사항, 출결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 의견)의 학교폭력 관련 내용이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로 이동 및 항목 신설(2·3학년) <i>&lt;훈령, 해설, 기재요령 내용 생략&gt;</i></li> </ul>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	표준 가이드 라인 (p.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구(항목) 수정 및 추가(기재요령)</li> <li>☞ • 정규교육과정 이수과정에서 사교육 개입 없이 학교 내에서 학생주도로 수행한 자율탐구활동*에 한하여 <b>학생의 특기사항**만을</b> 기재할 수 있음. * 자율탐구활동: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주제 선정 부터 보고서 작성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임.</li> <li>** 예) 자료 수집 능력 및 분석능력 탁월, 주제 선정 시 진로와 사회문제 연결 노력 등</li> <li>※ <b>창의적 체험활동상황에 자율탐구활동 학생산출물(소논문 포함) 실적은 기재할 수 없음.</b></li> <li>• 창의적 체험활동 중에 자율탐구활동을 기재할 경우 학교에서는 정규교육과정 중에 이루어진 활동임을 증빙하기 위한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b>&lt;증빙자료 예시&gt; 학교교육계획서,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각종 문서, 학생활동 산출물 등</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li> <li>☞ • 정규교육과정 이수과정에서 사교육 개입 없이 학교 내에서 학생주도로 수행한 자율탐구활동*에 한하여 학생의 특기사항**만을 기재할 수 있음. * 자율탐구활동: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주제 선정 부터 보고서 작성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임.</li> <li>** 예) 자료 수집 능력 및 분석능력 탁월, 주제 선정 시 진로와 사회문제 연결 노력 등</li> <li>※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에 자율탐구활동 학생산출물(소논문 포함) 실적은 기재할 수 없음.</li> <li>• 창의적 체험활동 중에 자율탐구활동을 기재할 경우 학교에서는 정규교육과정 중에 이루어진 활동임을 증빙하기 위한 자료를 <b>보관해야 함.</b> <i>&lt;증빙자료 예시&gt; 학교교육계획서,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각종 문서, 학생활동 산출물 등</i></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li> <li>☞ • 정규교육과정 이수과정에서 사교육 개입 없이 학교 내에서 학생주도로 수행한 자율탐구활동*에 한하여 학생의 특기사항**만을 기재할 수 있음. * 자율탐구활동: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주제 선정부터 보고서 작성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임.</li> <li>** 예) 자료 수집 능력 및 분석능력 탁월, 주제 선정 시 진로와 사회문제 연결 노력 등</li> <li>※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에 자율탐구활동 학생산출물(소논문 포함) 실적(제목, 연구 주제 및 참여인원, 소요시간)은 기재할 수 없음.</li> <li>• 창의적 체험활동 중에 자율탐구활동을 기재할 경우 학교에서는 정규교육과정 중에 이루어진 활동임을 증빙하기 위한 자료를 보관해야 함. <i>&lt;증빙자료 예시&gt; 학교교육계획서,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각종 문서, 학생활동 산출물 등</i></li> </ul>	
	입력 가능한 체험활동 조건 (p.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구(항목) 수정 및 추가(기재요령)</li> <li>☞ 나.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영역별 체험활동 특기 사항은 활동 장소가 국내일 경우에 한하여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입력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li> <li>☞ 나.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영역별 체험활동 특기 사항은 활동 장소가 국내일 경우에 한하여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b>입력할 수 있다.</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구(항목) 수정 및 추가(기재요령)</li> <li>☞ 나.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영역별 체험활동 특기사항은 활동 장소가 국내일 경우에 한하여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입력할 수 있다.</li> </ul>	

영역 (항목)	내용 (2024 페이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p>입력 가능한 체험활동 조건 (p.96)</p>	<p>1)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학교가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2) 타 중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중 <b>학교장이 승인한 체험활동</b> 3) 교육관련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중 <b>학교장이 승인한 체험활동</b></p> <p>※ 복수의 기관이 주최하고 주관하는 체험활동은 모든 기관이 <b>교육관련기관 또는 중학교이어야 하며 학교장이 승인한 체험활동만 기재 가능함.</b></p> <p>※ <b>교육관련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b></p>	<p>1)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학교가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2) 타 중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중 학교장이 승인한 체험활동 3) 교육관련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중 학교장이 승인한 체험활동</p> <p>※ 복수의 기관이 주최하고 주관하는 체험활동은 모든 기관이 교육관련기관 또는 중학교이어야 하며 학교장이 승인한 체험활동만 기재 가능함.</p> <p>※ 교육관련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p>	<p>1) 학교교육계획에 <b>따라</b> 학교가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 <b>필요 입력 조건(모두 충족해야 함): ① 학교교육계획 ② 학교에서 주최와 주관 ③ 국내활동</b> 2) 타 중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중 학교장이 승인한 체험활동 ※ <b>필요 입력 조건(모두 충족해야 함): ① 학교장 승인 ② 타 중학교에서 주최와 주관 ③ 국내활동</b> 3) 교육관련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중 학교장이 승인한 체험활동 ※ <b>필요 입력 조건(모두 충족해야 함) : ① 학교장 승인 ② 교육관련기관에서 주최와 주관 ③ 국내활동</b></p> <p>※ 복수의 기관이 주최하고 주관하는 체험활동은 모든 기관이 교육관련기관 또는 중학교이어야 하며 학교장이 승인한 체험활동만 기재 가능함.</p> <p>※ 교육관련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p>	
<p>창의적 체험활동 상황</p>	<p>특기 사항 기재 (p.98)</p>	<p>■ <b>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b></p> <p>☞ 나. 특기사항에 정량적인 기록이 가능한 부분은 횟수와 시간 등을 정량적으로 입력할 수 있다. 〈예시〉 월 1회, 6회, 2021.03.02.-2021.07.08./5회, 4시간, 학급회·학생자치회 임원 <b>재입</b> 기간 등</p> <p>다. 창의적 체험활동 각 영역의 이수시간이 0시간인 학생에 대해서는 〈예시〉와 같이 그 사유를 특기사항에 입력한다. 〈예시〉 <b>순회교육대상학생의 경우: 순회교육으로 활동 내용이 없음. / 장기결석생인 경우: 장기결석으로 활동 내용이 없음. / 위탁학생의 경우: 위탁학생으로 활동 내용이 없음.</b></p> <p>※ 단, <b>순회교육</b>, 위탁교육기관, 병원학교·원격수업기관의 활동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그대로 입력하되 <b>자료 입력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의 각종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입력함.</b></p> <p>라. 학교교육과정 상 편성하지 않은 영역의 특기사항은 입력하지 않음. 단, 진로활동 영역은 편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진로희망분야와 각종 진로검사 및 진로상담 결과, 관심 분야 등 학생의 진로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을 담임교사가 입력함.</p>	<p>■ <b>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b></p> <p>☞ 나. 특기사항에 정량적인 기록이 가능한 부분은 횟수와 시간 등을 정량적으로 입력할 수 있다. <b>〈예시〉 학급회의(월 1회), 학교폭력예방활동(2024.03.04.-2024.07.08./5회), 민주시민교육(2024.09.13.), 양성평등교육 (4시간)</b></p> <p>다. 창의적 체험활동 각 영역의 이수시간이 0시간인 학생에 대해서는 〈예시〉와 같이 그 사유를 특기사항에 입력한다. 〈예시〉 순회교육대상학생의 경우: 순회교육으로 활동 내용이 없음. / 장기결석생인 경우: 장기결석으로 활동 내용이 없음. / 위탁학생의 경우: 위탁학생으로 활동 내용이 없음.</p> <p>※ 단, 순회교육, 위탁교육기관, 병원학교·원격수업기관의 활동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그대로 입력하되 자료 입력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각종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입력함.</p> <p>라. 학교교육과정 상 편성하지 않은 영역의 특기사항은 입력하지 않음. 단, 진로활동 영역은 편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진로희망분야와 각종 진로검사 및 진로상담 결과, 관심 분야 등 학생의 진로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을 담임교사가 입력함.</p>		

영역 (항목)	내용 (2024 페이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	자치활동 임원 재임기간 (p.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li> <li>☞ 다. 자치활동 관련 특기사항에 입력하는 임원의 <b>재임기간</b>은 1학년은 입학일부터 학년 말, 2학년은 3월 1일부터 학년 말, 3학년은 3월 1일부터 졸업일까지로 입력한다.</li> <li>※ 학기 단위로 임명하는 경우의 임원의 <b>재임기간</b>은 학기 시작일부터 학기 종료일까지로 입력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li> <li>☞ 다. 자치활동 관련 특기사항에 입력하는 임원의 재임기간은 1학년은 입학일부터 학년 말, 2학년은 3월 1일부터 학년 말, 3학년은 3월 1일부터 졸업일까지로 입력한다.</li> <li>※ 학기 단위로 <b>선출</b>하는 경우의 임원의 재임기간은 학기 시작일부터 학기 종료일까지로 입력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li> <li>☞ 다. 자치활동 관련 특기사항에 입력하는 임원의 재임기간은 <b>1·2학년은 3월 1일부터 학년말</b>, 3학년은 3월 1일부터 졸업일까지로 입력한다.</li> <li>※ 학기 단위로 선출하는 경우의 임원의 재임기간은 학기 시작일부터 학기 종료일까지로 입력함.</li> </ul>
	자치활동 임원 재임기간 (p.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li> <li>☞ ○ 학교 사정에 따라 임원의 활동기간이 학기 또는 학년 단위가 아닌 월 단위 등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실제 활동기간을 <b>재임기간</b>으로 입력함.</li> <li>○ 임원이 임기 도중에 그만두는 경우에는 실제 종료일까지를 <b>재임기간</b>으로 입력함.</li> <li>○ 학기 중, 임원의 학적변동 등으로 재선출하는 경우 신임 임원 <b>재임기간</b>의 시작일은 재선출일을 입력하되, 학교의 여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li> <li>○ 1학년 2학기 및 2학년 1학기과 같이 학기 단위로 임명하는 경우 해당 학년의 자율활동 영역에 나누어 임원 <b>재임기간</b>을 입력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구(항목) 수정 및 추가(기재요령)</li> <li>☞ ○ 학교 사정에 따라 임원의 활동기간이 학기 또는 학년 단위가 아닌 월 단위 등으로 <b>선출</b>하는 경우에는 실제 활동기간을 재임기간으로 입력함.</li> <li>○ 임원이 임기 도중에 그만두는 경우에는 실제 종료일까지를 재임기간으로 입력함.</li> <li>○ <b>임원 선거일 이전 전입한 학생이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 재임기간의 시작일은 전입일로 입력하되, 학교의 여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b></li> <li>○ 학기 중, 임원의 학적변동 등으로 재선출하는 경우 신임 임원 재임기간의 시작일은 재선출일을 입력하되, 학교의 여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li> <li>○ 1학년 2학기 및 2학년 1학기과 같이 학기 단위로 임명하는 경우 해당 학년의 자율활동 영역에 나누어 임원 재임기간을 입력함.</li> <li>○ <b>재임 기간이 2개 학년에 걸쳐 있을 경우 해당 학년의 자율활동 영역에 나누어 임원 재임기간을 입력함.</b></li> </ul>	
	위탁교육기관 에서 실시한 봉사활동 실적 입력 방법 (p.103)			전년도와 동일	

영역 (항목)	내용 (2024 페이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	봉사 활동 실적 (p.103)	전년도와 동일	<p>■ 문구(항목) 수정 및 신설(기재요령)</p> <p>☞ 다. 다음의 사항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입력하지 않는다.</p> <p>1) 미인정 결석 중 실시한 봉사활동</p> <p>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생의 징계</p> <p>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의한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p> <p>4) 「소년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봉사</p> <p>5)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에 의한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p>		
	헌혈 봉사활동 인정시간 (p.104)	전년도와 동일	<p>■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p> <p>☞ ※ 다만, 헌혈은 1일 최대 봉사활동 인정 가능 시간(8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회당 4시간으로 <b>당해 학년도</b> 3회의 범위 내에서 실적으로 인정함.</p>		
	실적연계 사이트를 통한 봉사활동 실적 반영 시 유의사항 (p.104)	전년도와 동일	<p>■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p> <p>☞ 아. 실적 연계 사이트를 통한 봉사활동 실적 반영 시 다음 내용을 반드시 제외해야 하며, <b>학교생활 기록부 기재요령의 유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b></p>		
	훈령 제243호 (2018.3.1.) 이전 훈령이 적용된 학생의 복귀시 '희망분야'에 자동 반영되는 내용 (p.106)	전년도와 동일	<p>■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p> <p>☞ 가. 전출·입, 학업중단 학생 복귀 시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p> <p>1) 전출 시에는 전출일 현재까지의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활동 내용과 실적 및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작성된 누가기록 자료를 전입교로 전송(송부)한다. 이때, 입력의 근거가 되는 증빙서류는 원적교에서 보관한다.</p> <p>2) 학생이 학업 중단(유예, 면제 등) 후 복귀(재취학, 편입학)로 학년도 간 훈령 적용이 다른 경우, 이전 훈령에 의해 작성된 특별활동상황 및 창의적 재량활동 자료는 교육부훈령 제393호의 창의적 체험활동 서식에 맞추어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자치·적응·행사활동, 창의적 재량활동은 자율활동으로, 봉사활동은 봉사활동으로, 계발활동은 동아리활동으로 자동으로 반영된다.</p> <p>☞ ※ 다만, 이전 훈령에 있었던 교외체험활동상황은 자동으로 삭제되며, 학생의 학업 중단 후 학기를 달리하여 복귀하는 경우에는 업무담당교사(학급담당교사 등)가 창의적 체험활동 서식에 맞추어 해당란에 영역별 내용을 직접 입력한다.</p> <p>3) 교육부훈령 제280호 이전 훈령의 적용을 받던 중학생이 학업중단(유예, 면제 등) 후 복귀(재취학, 편입학)로 교육부훈령 제280호 이후의 훈령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 '진로희망사항' 중 '진로희망'은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활동' 특기사항 내 '희망분야'란에 자동으로 반영되며, '희망사유'는 자동으로 삭제된다.</p> <p>☞ ※ 다만, '희망분야'에 기재된 내용은 상급학교 진학 시 전형자료로 제공하지 않는다.</p>		

영역 (항목)	내용 (2024 페이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	유의 사항 (p.107)	<p>■ 문구(항목) 수정 및 추가(기재요령)</p> <p>☞ ○ 특기사항에는 활동실적(내용)의 단순한 나열식 입력은 지양하며,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 기관명*(<u>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u>), 상호명, 강사명**은 입력하지 않음.</p> <p>○ * 기관명 - 교육관련기관(교육부 및 소속기관*,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에 한함)의 경우 기관명을 입력할 수 있음. * 교육부 소속기관: 대한민국학술원, 국사편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국립특수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총 6개 기관) **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 [참고자료 5] 참조 ※ <u>교육관련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u> -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에는 구체적인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을 입력함. ○ ** 강사명 - 특정 강사명은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모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참여한 강의(또는 교육활동)의 강사를 말함.</p> <p>○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실적은 한 개 영역에 입력하고, 다른 영역에 중복하여 입력하지 않음. ○ 자율활동·동아리활동·진로활동의 특기사항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입력함.</p>		<p>■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p> <p>☞ ○ 특기사항에는 활동실적(내용)의 단순한 나열식 입력은 지양하며,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 기관명<sup>1)</sup>(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상호명, 강사명<sup>2)</sup>은 입력하지 않음.</p> <p>1) 기관명 - 교육관련기관(교육부 및 소속기관*,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에 한함)의 경우 기관명을 입력할 수 있음. * 교육부 소속기관: 대한민국학술원, 국사편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국립특수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총 6개 기관) **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 [참고자료 4] 참조 ※ 교육관련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에는 구체적인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을 입력함.</p> <p>2) 강사명 - 특정 강사명은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모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참여한 강의(또는 교육활동)의 강사를 말함.</p> <p>○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실적은 한 개 영역에 입력하고, 다른 영역에 중복하여 입력하지 않음. ○ 자율활동·동아리활동·진로활동의 특기사항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입력함.</p>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술방법 (p.115)	<p>■ 문구(항목) 신설(해설)</p> <p>☞ 라. '<u>세부능력 및 특기사항</u>'에서는 <u>학생들의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학생들의 교과특성은 교사가 교과학습 평가 및 수업과정에서 수시·상시로 기록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과의 전 영역을 종합적으로 기술한다.</u></p>		<p>■ 문구(항목) 수정 및 추가(해설)</p> <p>☞ 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서는 학생들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학생들의 교과특성은 교사가 교과학습 평가 및 수업 과정에서 수시·상시로 기록한 내용을 중심으로 전 영역을 <u>고려하여</u> 종합적으로 기술한다. ※ '<u>세부능력 및 특기사항</u>'의 기술은 <u>성취기준과 성취수준에 근거하여 학생 개인의 성취과정과 성취 특성이 명료히 드러나도록 하되, 수업에서 이루어진 활동의 단순 나열이나 이미 성취기준에 명시된 지식의 단순 서술은 지양함.</u></p>
교과 학습 발달 상황	평가의 세부적인 사항 (p.116)	전년도와 동일			<p>■ 문구(항목) 추가(해설)</p> <p>☞ 5)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실시 비율, <u>서·논술형 문항 출제 비율</u> 등 평가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실시한다. ※ 단, <u>학생의 발달 특성 및 과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지필평가는 서·논술형 문항만으로도 평가할 수 있음.</u></p>

영역 (항목)	내용 (2024 페이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교과 학습 발달 상황	지필평가 문항 참고자료 안내 (p.116)		전년도와 동일		<p>■ 문구(항목) 추가(해설)</p> <p>☞ 1) 본 훈령에서 '지필평가'는 '중간 또는 기말고사 (1회, 2회고사 등)와 같은 '일제식 정기고사'를 의미하며, '문항정보표'의 구성에 따라 '선택형'과 '서답형'으로 구분한다. 단, 시·도교육청 공동으로 실시하는 '영어듣기평가'는 수행평가로 간주할 수 있으며, 학교에서 형성평가 및 수행평가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선택형' 및 '서답형' 문항으로 구성된 평가는 본 훈령의 '지필평가'에 해당하지 않는다.</p> <p>※ <u>지필평가 문항 중 선택형 문항(진위형, 배합형, 선다형), 서답형 문항(완성형, 단답형, 서술형, 논술형)의 구분은 「중학교 학생평가 안내서 (툇아보기)」 자료 참고</u></p>
	수행평가 유형 참고자료 안내 (p.117)		전년도와 동일		<p>■ 문구(항목) 추가(해설)</p> <p>☞ 2) '수행평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가) ~ 라) (생략)</p> <p>※ <u>수행평가 과제 유형은 「중학교 학생평가 안내서 (툇아보기)」 자료 참고</u> <u>(예) 서술·논술, 구술·발표, 토의·토론, 프로젝트, 실험·실습, 포트폴리오 등</u></p>
	지필평가 기출문제 공개 (p.117)		전년도와 동일		<p>■ 문구(항목) 추가(해설)</p> <p>☞ 다) 학년별·교과별 평가 계획은 학기 초에 학생 및 학부모에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 실시 전에 평가 방법 및 채점기준 등 평가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을 학생에게 안내하여 학생들이 해당 평가의 평가 방법 및 평가 요소를 인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세부적인 채점기준을 모두 공개하기 어려운 경우, 채점기준에 포함된 평가</p>

영역 (항목)	내용 (2024 페이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교과 학습 발달 상황	지필평가 기출문제 공개 (p.117)					<p>요소를 공개하도록 한다. 또한, 평가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변경사항을 확정하고, 평가 실시 전에 변경 사항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하여야 한다.</p> <p><b>※ 학교는 지필평가 기출문제를 공개하되, 공개 범위와 방법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 학교장이 정함.</b></p>
	과제형 수행평가 금지 범위 (p.118)	전년도와 동일				<p><b>■ 문구(항목) 추가(해설)</b></p> <p>☞ 자) 정규교육과정 외에 학생이 수행한 결과물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는 과제형 수행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p> <p><b>※ 과제형 수행평가 금지에는 사전 준비가 필요한 압기식 수행평가 등이 포함됨을 유의하여야 함.</b></p>
	위탁학생 성적처리 방식 (p.120)	<p><b>■ 문구(항목) 수정(해설)</b></p> <p>☞ 마) 위탁학생 성적처리 방식 (1) 위탁학생이 위탁교(기관)에서 성적을 취득한 경우, 위탁교(기관)의 성적을 인정하고, 재적교 성적산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때, 위탁교(기관)에서 보내온 성적은 동일(유사) 과목으로 인정하여 입력한다. 다만, 성적(성취도,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등)이 산출되지 않은 과목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문장으로 이수 내용만을 입력한다.</p>	<p><b>■ 문구(항목) 수정(해설)</b></p> <p>☞ 라) 위탁학생 성적처리 방식 (1) 위탁학생이 위탁교(기관)에서 성적을 취득한 경우, 위탁교(기관)의 성적을 인정하고, 재적교 성적산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때, 위탁교(기관)에서 보내온 성적은 동일(유사) 과목으로 인정하여 입력한다. 다만, 성적(성취도, 원점수, 과목평균 등)이 산출되지 않은 과목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문장으로 이수 내용만을 입력한다.</p>	<p><b>■ 문구(항목) 수정(해설)</b></p> <p>☞ 라) 위탁학생 성적처리 방식 (1) 위탁학생이 위탁교(기관)에서 성적을 취득한 경우, 위탁교(기관)의 성적을 인정하고, 재적교 성적산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때, 위탁교(기관)에서 보내온 성적은 <b>동일(유사) 과목*</b>으로 인정하여 입력한다. 다만, 성적(성취도, 원점수, 과목평균 등)이 산출되지 않은 과목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문장으로 이수 내용만을 입력한다.</p> <p><b>* 위탁교육기관에서 보내온 과목이 [학적-위탁 학생관리-위탁학생관리-자료관리], '성적의 [과목 추가]-과목찾기'에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 '과목 찾기의 과목명 목록'에서 유사한 과목으로 선택함.</b></p>		

영역 (항목)	내용 (2024 페이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교과 학습 발달 상황	재취학, 전·편입학한 학생 성적 처리 (p.121)	전년도와 동일			<b>■ 문구(항목) 수정(해설)</b>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th> <th colspan="2">1회고사 성적</th> <th colspan="2">2회고사 성적</th> <th rowspan="2">비고</th> </tr> <tr> <th>원적교</th> <th>재취학 등</th> <th>원적교</th> <th>재취학 등</th> </tr> </thead> <tbody> <tr> <td>기본 원칙</td> <td>○</td> <td>×</td> <td>×</td> <td>○</td> <td>원적교 1회고사+재취학 등 2회고사</td> </tr> <tr> <td>동일 평가 성적 중복</td> <td>○</td> <td>×</td> <td>○</td> <td>○</td> <td>원적교 1회고사+재취학 등 2회고사</td> </tr> <tr> <td>동일 평가 성적 미비</td> <td>×</td> <td>×</td> <td>×</td> <td>○</td> <td><b>재취학 등 2회고사에 따른 인정점</b>+재취학 등 2회고사</td> </tr> <tr> <td>동일 평가 성적 미비 (모든 평가)</td> <td>×</td> <td>×</td> <td>×</td> <td>×</td> <td>사·도지침에 따라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결정  * 응시자가 모두 없었을 경우와 모두 결사한 경우에 대한 인정점 부여 기준 마련</td> </tr> </tbody> </table>		1회고사 성적		2회고사 성적		비고	원적교	재취학 등	원적교	재취학 등	기본 원칙	○	×	×	○	원적교 1회고사+재취학 등 2회고사	동일 평가 성적 중복	○	×	○	○	원적교 1회고사+재취학 등 2회고사	동일 평가 성적 미비	×	×	×	○	<b>재취학 등 2회고사에 따른 인정점</b> +재취학 등 2회고사	동일 평가 성적 미비 (모든 평가)	×	×	×	×	사·도지침에 따라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결정  * 응시자가 모두 없었을 경우와 모두 결사한 경우에 대한 인정점 부여 기준 마련
		1회고사 성적		2회고사 성적			비고																																
		원적교	재취학 등	원적교	재취학 등																																		
기본 원칙	○	×	×	○	원적교 1회고사+재취학 등 2회고사																																		
동일 평가 성적 중복	○	×	○	○	원적교 1회고사+재취학 등 2회고사																																		
동일 평가 성적 미비	×	×	×	○	<b>재취학 등 2회고사에 따른 인정점</b> +재취학 등 2회고사																																		
동일 평가 성적 미비 (모든 평가)	×	×	×	×	사·도지침에 따라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결정  * 응시자가 모두 없었을 경우와 모두 결사한 경우에 대한 인정점 부여 기준 마련																																		
표준 가이드라인 (p.123)	<b>■ 문구(항목) 수정 및 삭제(기재요령)</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교과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및 학습활동 참여도</b>, 자기주도적 학습에 의한 변화와 성장 정도를 중심으로 기재함.</li> <li>• <b>방과후학교 활동은 기재하지 않음.</b></li> <li>• <b>연구보고서(소논문) 작성과 관련된 사항은 기재하지 않음.</b></li> </ul>	전년도와 동일			<b>■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교과목별</b>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및 학습활동 참여도, 자기주도적 학습에 의한 변화와 성장 정도를 중심으로 기재함.</li> <li>• 방과후학교 활동은 기재하지 않음.</li> <li>• 연구보고서(소논문) 작성과 관련된 사항은 기재하지 않음.</li> </ul>																																		
유학 후 귀국한 학생의 교과학습 발달상황 처리 (p.123)	전년도와 동일			<b>■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 유학(미인정유학 포함) 후 귀국한 학생의 유학 기간의 '교과학습발달상황'은 공란으로 둔다.</li> <li>※ 해당 기간의 기록은 학년을 결정하는 참고자료로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기록이 아니므로 학교 생활기록부에 입력하지 않음.</li> </ul>																																			

영역 (항목)	내용 (2024 페이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입력 사항 (p.1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문구(항목) 수정 및 추가(기재요령)</b></li> <li>☞ 사.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li> <li>● <b>학력인정 대안학교: 학력인정 대안학교의 성적 산출 방식이 전입교와 다른 경우</b></li> <li>● <b>전·입학, 귀국 등에 따른 미이수 교과목</b> 보충 학습과정: 전·입학, 귀국 등에 따라 특정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하여 온·오프라인의 방법으로 '보충 학습 과정'을 실시했는데 당해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경우</li> <li>● <b>방송통신중학교의 학교 외 학습경험 인정에 따른 과목 이수: 당해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b></li> <li>☞ 사.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li> <li>● <b>전·편입학, 귀국 등에 따른 미이수 교과목</b> 보충 학습 과정: <b>전·편입학</b>, 귀국 등에 따라 특정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하여 온·오프라인의 방법으로 '보충 학습 과정'을 실시했는데 당해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경우와 동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b></li> <li>☞ <b>라.</b>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i>〈이하 내용 전년도와 동일〉</i></li> </ul>		
교과 학습 발달 상황	영재교육 이수 내용 (p.126)	전년도와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문구(항목) 수정 및 위치이동(기재요령)</b></li> <li>☞ 1) 「<b>영재교육 진흥법</b>」에 따른 영재교육기관(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에서 수료한 영재교육 관련 내용은 관련 교과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만 입력한다(근거법령: 「<b>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b>, 제36조제1항·제2항).</li> <li>※ 단, 당해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성적]-[성적처리]-[개인별세부능력및특기사항]에 입력하되, 체험활동 등 특기사항은 입력하지 않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b></li> <li>☞ 1)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교육기관(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에서 수료한 영재교육 관련 내용은 관련 교과의 [성적-성적처리-과목별세부능력및특기사항]에서 '영재교육 기록사항'에만 입력한다(근거법령: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항).</li> <li>※ 단, 당해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성적-성적처리-개인별세부능력및특기사항]의 '영재교육 기록사항'에 입력하되, 체험활동 등 특기사항은 입력하지 않음. <i>〈나이스 기재경로 변경은 2023년 4세대 나이스 개통 이후부터 적용됨.〉</i></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문구(항목) 수정 및 위치이동(기재요령)</b></li> <li>☞ ※ <b>영재교육기관(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이수내용을 입력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기관 명칭은 입력하지 않음.</b> <b>〈예시〉 영재교육원에서 1학년 과정 정보 영역(120시간) 110시간을 이수함. / 영재학급에서 1학년 과정 정보 영역(120시간) 120시간을 이수함.</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문구(항목) 수정 및 위치이동(기재요령)</b></li> <li>☞ ※ (<b>※ 영재교육기관~ 입력하지 않음.</b> <b>〈예시〉~ 이수함. - 해당문구 위치 이동</b>)</li> </ul>		

영역 (항목)	내용 (2024 페이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교과 학습 발달 상황	영재교육 이수 내용 (p.126)	<p>■ 문구(항목) 위치이동(기재요령)</p> <p>☞ ○ 당해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성적]-[성적처리]-[개인별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하되, 체험활동 등 특기사항은 입력하지 않음. <b>(※ 영재교육기관~ 입력하지 않음.)</b> <b>〈예시〉~ 이수함. - 해당문구 위치 이동</b></p> <p>○ [성적]-[성적처리]-[개인별세부능력및특기사항] 또는 [과목별 세부능력및특기사항]에서 ‘&lt;@&gt;’ 식별자를 전과 후로 입력하고 특기사항을 등록한 후 [학생부]-[학교생활기록부]-[개인별조회]의 출력 옵션에서 ‘영재기록사항제외(고입용)’을 체크하여 조회하면 해당 내용이 출력되지 않음. 〈예시〉 &lt;@&gt;영재교육원에서 1학년 과정 정보 영역(120시간) 120시간을 이수함.&lt;@&gt;</p>		<p>■ 문구(항목) 위치이동 및 신설(기재요령)</p> <p>☞ <b>(○ 당해 학기에 ~ 해당문구 위치 이동)</b></p> <p>○ 영재교육기관(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이수내용을 입력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기관 명칭은 입력하지 않음. <b>〈예시〉 영재교육원에서 1학년 과정 정보 영역 (120시간) 110시간을 이수함. / 영재 학급에서 1학년 과정 정보 영역(120시간) 120시간을 이수함.</b></p> <p>○ [성적]-[성적처리]-[개인별세부능력및특기사항] 또는 [과목별세부능력및특기사항]에서 ‘&lt;@&gt;’ 식별자를 전과 후로 입력하고 특기사항을 등록한 후 [학생부]-[학교생활기록부]-[개인별조회]의 출력 옵션에서 ‘영재기록사항제외(고입용)’을 체크하여 조회하면 해당 내용이 출력되지 않음. 〈예시〉 &lt;@&gt;영재교육원에서 1학년 과정 정보 영역(120시간) 120시간을 이수함.&lt;@&gt;</p>	<p>■ 문구(항목) 위치이동 및 신설(기재요령)</p> <p>☞ ○ 영재교육기관(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이수내용을 입력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기관 명칭은 입력하지 않음. 〈예시〉 영재교육원에서 1학년 과정 정보 영역 (120시간) 110시간을 이수함. / 영재학급 에서 1학년 과정 정보 영역(120시간) 120시간을 이수함.</p> <p>○ [성적-성적처리-개인별세부능력및특기사항] 또는 [과목별세부능력및특기사항]에서 ‘<b>영재교육 기록사항</b>’에 등록된 후 [학생부-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조회 및 출력]의 [항목 옵션선택]에서 ‘<b>상급학교 제출용</b>’을 체크한 후 ‘<b>영재기록사항제외</b>’를 체크하여 조회하면 해당 내용이 출력되지 않음. <b>〈예시〉 &lt;@&gt;영재교육원에서 1학년 과정 정보 영역 (120시간) 120시간을 이수함.&lt;@&gt;</b></p> <p>○ 입력된 글자 수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글자 수에 산입되지 않음. <b>〈나이스 기재경로 변경은 2023년 4세대 나이스 개통 이후부터 적용됨.〉</b></p>
	발명교육 이수 내용 (p.127)	전년도와 동일		<p>■ 문구(항목) 수정 및 추가(기재요령)</p> <p>☞ 1) 발명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학생의 교육실적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제3항에 따라 관련 교과(기술·가정 또는 과학)의 ‘<b>세부능력 및 특기사항</b>’에만 입력한다. <b>※ 단, 당해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성적-성적처리-개인별세부능력및특기사항]에 입력하되, 체험활동 등 특기사항은 입력하지 않음.</b></p>	
	유의 사항 (p.128)	<p>■ 문구(항목) 수정 및 추가(기재요령)</p> <p>☞ ○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 입력 불가 항목 - 각종 공인어학시험(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유의사항 참조)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 - 교과·비교과 관련 교외대회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p>		<p>■ 문구(항목) 수정 및 삭제(기재요령)</p> <p>☞ ○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 입력 불가 항목 - 각종 공인어학시험(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유의사항 참조)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 - 교과·비교과 관련 교외대회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p>	

영역 (항목)	내용 (2024 페이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교과 학습 발달 상황	유의 사항 (p.128)	<p>(학교장의 참가 허락을 받아 참여한 각종 교외대회에서의 수상실적도 기재 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외 기관·단체(장)등에게 수상한 교외상(표창장, 감사장, 공로상 등도 기재 불가)</li> <li>- 교내·외 인증시험 참여 사실이나 그 성적</li> <li>- 논문을 학회지 등에 투고 또는 등재하거나 학회 등에서 발표한 사실</li> <li>- 도서출간 사실,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 또는 등록 사실</li> <li>- <b>교내대회 참여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실적</b></li> <li>- <b>이외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유의사항'에서 기재 금지한 사항 일체</b></li> <li>- K-MOOC, MOOC, KOCW</li> <li>- 자율탐구활동으로 작성한 <b>연구보고서(소논문)</b> 관련사항 일체는 기재할 수 없으며, 탐구보고서 등으로 편법적 기재 금지</li> </ul> <p>※ 대회와 관련하여, 대회의 명칭을 단순행사로 변경하여 입력하는 행위 불가('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포함하여 '수상경력' 이외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변경 입력 불가)</p>		<p>(학교장의 참가 허락을 받아 참여한 각종 교외대회에서의 수상실적도 기재 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외 기관·단체(장) 등에게 수상한 교외상(표창장, 감사장, 공로상 등도 기재 불가)</li> <li>- 교내·외 인증시험 참여 사실이나 그 성적</li> <li>- 논문을 학회지 등에 투고 또는 등재하거나 학회 등에서 발표한 사실</li> <li>- 도서출간 사실,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출원 또는 등록 사실</li> <li>- 교내대회 참여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실적</li> <li>- 이외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유의사항'에서 기재 금지한 사항 일체</li> <li>- K-MOOC, MOOC, KOCW</li> </ul> <p><b>-자율탐구활동으로 작성한 연구보고서(소논문) 관련사항 일체는 기재할 수 없으며, 탐구보고서 등으로 편법적 기재 금지</b></p> <p>※ 대회와 관련하여, 대회의 명칭을 단순행사로 변경하여 입력하는 행위 불가('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포함하여 '수상경력' 이외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변경 입력 불가)</p>	
자유 학기 활동 상황	학업 중단 학생 자유학기활동 입력 (p.129)	<p>■ 문구(항목) 수정(해설)</p> <p>☞ ※ 학업중단자(유예, 면제 등)의 경우 학업중단일을 기준으로 자유학기활동의 이수시간과 특기사항을 입력함.</p>		<p>■ 문구(항목) 수정(해설)</p> <p>☞ ※ <b>학업 중단 학생</b>(유예, 면제 등)의 경우 학업중단일<b>까지의</b> 자유학기활동의 이수시간과 특기사항을 입력함.</p>	
	자유학기활동 특기사항 입력 시 금지사항 (p.131)	<p>■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p> <p>☞ ※ 단, 체험활동을 한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 기관명*(<b>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b>), 상호명, 강사명**은 입력하지 않음. <b>&lt;표 생략&gt;</b></p>		<p>■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p> <p>☞ ※ 단, 체험활동을 한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 기관명<sup>1)</sup>(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상호명, 강사명<sup>2)</sup>은 입력하지 않음. <b>&lt;표 생략&gt;</b></p>	
독서 활동 상황	표준 가이드라인 (p.134)	<p>■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p> <p>☞ •독서 과정의 관찰·확인이 어려운 독서 성향 등은 기재하지 않고, 읽은 책의 제목과 저자만 기재하여 독서활동 기록의 신뢰도를 제고함.</p> <p>※ ISBN에 등재된 도서에 한해 가능함(<b>정기간행물은 입력 불가</b>).</p> <p>※ 정기간행물 즉 ISSN에 등재된 도서는 기재 할 수 없음.</p>		<p>■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p> <p>☞ •독서 과정의 관찰·확인이 어려운 독서 성향 등은 기재하지 않고, 읽은 책의 제목과 저자만 기재하여 독서활동 기록의 신뢰도를 제고함.</p> <p>※ ISBN에 등재된 도서에 한해 <b>기재</b> 가능함(정기간행물은 입력 불가).</p> <p>※ 정기간행물 즉 ISSN에 등재된 도서는 기재 할 수 없음.</p>	

영역 (항목)	내용 (2024 페이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독서 활동 상황	독서활동상황 유의사항 (p.135)	<b>■ 문구(항목) 신설(기재요령)</b> ◻ ◻ 독서활동상황은 독서기록장, 독서 포트폴리오,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의 증빙자료를 근거로 입력함.			<b>■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b> ◻ ◻ 독서활동상황은 독서기록장, 독서 포트폴리오, <b>독서로(구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b> 의 증빙자료를 근거로 입력함.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학교폭력 조치사항 입력 (p.136)				<b>■ 문구(항목) 삭제(훈령)</b> ◻ <del>② &lt;삭제&gt;</del> <b>■ 훈령 제393·433호 (2·3학년)</b>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b>제8조(출결상황)</b>            ② 행동특성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한다.         </div>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란의 기재내용 및 누가기록 관리 (p.136)	전년도와 동일	<b>■ 문구(항목) 수정(해설)</b> ◻ 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는 <b>행동특성</b> 을 포함한 각 항목에 기록된 자료를 종합하여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학급담임교사가 문장으로 입력하여 학생에 대한 일종의 추천서 또는 지도 자료가 되도록 작성한다. ※ <b>행동특성</b> 과 관련된 내용은 시·도교육감이 정한 방법에 따라 누가 기록하여 관리함.		<b>■ 문구(항목) 수정 및 추가(해설)</b> ◻ 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b>모든 학생에 대해 입력하며</b> 행동특성을 포함한 각 항목에 기록된 자료를 종합하여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학급담임교사가 문장으로 입력하여 학생에 대한 일종의 추천서 또는 지도 자료가 되도록 작성한다. <b>※ 학급담임교사가 직접 관찰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입력할 수 있음.</b> ※ 행동특성과 관련된 내용은 시·도교육감이 정한 방법에 따라 누가 기록하여 관리함.
	학교 폭력 관련 내용 (p.137)	<b>■ 문구(항목) 수정 및 추가(해설)</b> ◻ 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조치사항을 조치 결정일자(교육지원청 내부결재일)와 함께 결정 즉시 입력한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사항을 <b>이행 기간</b>	<b>■ 문구(항목) 수정(해설)</b> ◻ 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조치사항을 조치 결정일자(교육지원청 내부결재일)와 함께 결정 즉시 입력한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사항을 이행 기간 내에 이행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입력을 유보(2020.3.1. 이후 신고된 최초의 학교폭력 사안에 한하여 적용)하고, 해당 조치 사항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제1호·제2호·제3호) 조건부 기재유보 관리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b>■ 문구(항목) 수정(해설)</b> ◻ <del>다. &lt;삭제&gt;</del> <del>라. &lt;삭제&gt;</del> <del>마. &lt;삭제&gt;</del>

영역 (항목)	내용 (2024 페이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학교 폭력 관련 내용 (p.137)	<p><b>내에</b> 이행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입력을 <b>유보(2020.3.1. 이후 신고된 최초의 학교폭력 사안에 한하여 적용)</b>하고, 해당 조치 사항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제1호·제2호·제3호) 조건부 기재유보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p> <p>※ 동일한 학교폭력 사안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병과 받은 경우에도 <b>각각의</b> 조치사항을 이행하면 입력을 유보함.</p> <p>※ 동일한 학교폭력 사안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치를 병과 받은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는 조치사항을 이행하면 입력을 유보하고,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치사항은 <b>각 해당 영역에</b> 입력함.</p> <p>※ 학교장은 <b>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 대장</b>, <b>‘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제1호, 제2호, 제3호) 조건부 기재유보 관리대장’이 비공개 문서로 관리되고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책임 관리함.</b></p> <p>※ <b>학교폭력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받고, 이행기간 만료 이전에 집행정지(효력정지) 인용결정을 받아 조치를 미이행 했을 경우, 조치 이행 의무가 정지된 점을 고려하여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b>를 보류함.</p> <p>- <b>다만, 본안에 대한 심리 결과 청구가 기각된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 조치를 집행정지(효력정지) 결정 당시 남은 이행기간 내에 조치를 이행했는지 여부에 따라, 동 조치사항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여부 결정함.</b></p> <p>2) 위 ‘다’항 ‘1)’에 따라 조치사항 입력이 유보된 가해학생이 동일학교급에서 다시 다른 학교폭력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p>	<p>※ 동일한 학교폭력 사안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병과 받은 경우에도 각각의 조치사항을 이행하면 입력을 유보함.</p> <p>※ 동일한 학교폭력 사안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치를 병과 받은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는 조치사항을 이행하면 입력을 유보하고,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치사항은 각 해당 영역에 입력함.</p> <p>※ 학교장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 대장’,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제1호, 제2호, 제3호) 조건부 기재유보 관리대장’이 비공개 문서로 관리되고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책임 관리함.</p> <p>※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받고, 이행기간 만료 이전에 집행정지(효력정지) 인용결정을 받아 조치를 미이행 했을 경우, 조치 이행 의무가 정지된 점을 고려하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보류함.</p> <p>- 다만, 본안에 대한 심리 결과 청구가 기각된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 조치를 집행정지(효력정지) 결정 당시 남은 이행기간 내에 조치를 이행했는지 여부에 따라, 동 조치사항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여부 결정함.</p> <p>2) 위 ‘다’항 ‘1)’에 따라 조치사항 입력이 유보된 가해학생이 동일학교급에서 다시 다른 학교폭력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이전에 입력이 유보된 조치 사항을 포함하여 모두 입력한다.</p> <p>※ 조치 결정일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요청에 대해 교육장이 조치 결정한 날(교육지원청 내부결재일)을 의미함.</p> <p>〈예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제1호·제2호·제3호)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의 봉사 <b>10시간</b> 조치를 받음(2021.05.06.).</li> </ul> <p>〈예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제7호의 경우</p> <p>〈예시〉 학교폭력 사안으로 조치사항을 2개 이상(제1호, 제7호) 병과하여 받은 후 제1호는 이행하여 입력이 유보된 경우</p>		<p><b>[2·3학년 학생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입력]</b></p> <p><b>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조치사항을 조치결정 일자(교육지원청 내부결재일)와 함께 결정 즉시 입력한다.</b></p> <p><i>(이하 내용 생략)</i></p>

영역 (항목)	내용 (2024 페이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학교 폭력 관련 내용 (p.137)	<p>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이전에 입력이 유보된 조치 사항을 포함하여 모두 입력한다.</p> <p>※ 조치 결정일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요청에 대해 교육장이 조치 결정한 날(교육지원청 내부결재일)을 의미함.</p> <p>&lt;예시&gt;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제1호·제2호·제3호)을 받았으나 <b>이행하지 않은</b> 경우</p> <p>&lt;예시&gt; <b>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제7호의 경우</b></p> <p>&lt;예시&gt; 학교폭력 사안으로 조치사항을 2개 이상 (제1호, 제7호) 병과하여 받은 후 <b>제1호는 이행하여 입력이 유보된</b> 경우</p>	전년도와 동일	<p>■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p> <p>☞ 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사항 중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b>제1호·제2호·제3호</b>의 경우 졸업과 동시에 절차([참고자료 7] 참조)에 따라 삭제한다.</p> <p>※ <b>제1호(서면사과), 제2호(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b></p> <p>※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사항 대장을 관리하며, 학교폭력 조치사항(<b>제1호·제2호·제3호</b>) 삭제 대상자 명단을 학업성적관리 위원회에 통보함.</p> <p>1) 삭제 대상자는 학교생활 중 <b>제1호·제2호·제3호</b> 조치를 받은 졸업예정자로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i>(제7호 - 삭제)</i></p>	
기타 사항	사진 파일 용량 (p.141)	<p>■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p> <p>☞ 나. 교육정보시스템 입력용 사진의 파일용량은 <b>200KB(JPEG 형식 기준, 해상도 300dpi 정도)까지 지원하며, 사진일괄올리기 메뉴의 사진일괄변환 버튼을 활용하여 입력할 수 있다.</b></p>		<p>■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p> <p>☞ 나. 교육정보시스템 입력용 사진의 파일용량은 <b>200KB(JPEG 형식 기준, 해상도 300dpi 정도)까지 지원하며, [학적-기본학적관리-사진일괄 입력의 {사진일괄변환}을 활용하여 입력할 수 있다.</b></p> <p><i>&lt;나이스 기재경로 변경은 2023년 4세대 나이스 개통 이후부터 적용됨.&gt;</i></p>	

영역 (항목)	내용 (2024 페이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학교 생활기록부의 보존 기간 (p.142)	전년도와 동일		<b>■ 문구(항목) 수정(훈령)</b> ☞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준영구 보존하는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 I)와 학교생활세부사항 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 II)를 학생 졸업 후 <b>8년</b> 동안, 학교에서 보관하고, 이후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1조, 제32조에 따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자료의 보존	학교폭력 조치사항 삭제 관련 (p.142)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b>■ 문구(항목) 수정(훈령)</b> ☞ ④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 생활기록부 II) <b>인적·학적사항의 '특기사항'란에</b>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8호의 조치사항과 <b>'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b> 입력된 「 <b>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7호의 조치사항, 출결상황의 '특기사항'란에</b>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제5호·제6호의 조치사항을 학생의 졸업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b>'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b> 입력된 「 <b>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7호의 조치사항과 출결상황의 '특기사항'란에</b> 입력된 「 <b>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제5호·제6호의 조치사항은</b>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졸업하기 직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	<b>■ 문구(항목) 수정(훈령)</b> ☞ ④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 기록부 II)의 <b>'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에</b>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b>제17조 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 조치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b> 지난 후에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b>'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에</b> 입력된 「 <b>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b> 조치사항은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졸업하기 직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
		전년도와 동일		<b>■ 문구(항목) 수정(훈령)</b> ☞ ⑥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 생활기록부 II)의 <b>'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b>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b>제1호·제2호·제3호</b> 의 조치사항을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여야 한다. <b>(제7호 - 삭제)</b>	<b>■ 문구(항목) 수정(훈령)</b> ☞ ⑥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 생활기록부 II)의 <b>'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에</b>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의 조치사항을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여야 한다.

영역 (항목)	내용 (2024 페이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자료의 정정	학업중단학생 정정 주체 (p.146)	전년도와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구(항목) 수정(해설)</li> <li>☞ 나. 입력자(사용자)는 그 입력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잘못된 자료가 발견된 경우에는 자료 입력 당시 사용자가 자료검사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발견 학년도의 담임교사가 정정한다. 정정입력이 완료되면 입력 내용을 출력하여 그 출력물과 각종 보조자료의 내용과 대조·확인 작업을 실시하여 이상여부를 확인한다.</li> <li>※ <u>학업 중단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은 업무 담당자가 수행함.</u></li> </ul>
	자료의 정정 (재입학, 편입학 등 중복기간 자료 삭제) (p.147)	전년도와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li> <li>☞ 마. 교육정보시스템의 전자결재를 사용하는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전 출력물과 정정 입력 후 출력물을 첨부하지 않는다(결재 시 교육정보 시스템에서 정정 전 내용과 정정 후 내용 확인 가능). 단, <u>재취학·편입학 등에 따라 학생의 중복기간 자료를 삭제하는 경우, 삭제 전 출력물을 객관적 증빙자료로 보관한다.</u></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li> <li>☞ 마. 교육정보시스템의 전자결재를 사용하는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전 출력물과 정정 입력 후 출력물을 첨부하지 않는다(결재 시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정정 전 내용과 정정 후 내용 확인 가능). 단, <u>유급·재취학·편입학 등에 따라 학생의 중복기간 자료를 삭제하는 경우, 삭제 전 출력물을 객관적 증빙자료로 보관한다.</u></li> </ul>	
제공	개인정보 (진로 관련 사항) 활용 동의서 보관기간 (p.153)	전년도와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구(항목) 수정(기재요령)</li> <li>☞ ※ 개인정보(진로 관련 사항) 활용 동의서 서식은 별표 11을 활용하되, 절차·보관방법은 학교장이 정함(<u>중학교에서 학생 졸업 후 3년간</u> 보관).</li> </ul>

<b>총괄</b>	교육부 기초학력진로교육과	과장	유희승
<b>기획</b>	교육부 기초학력진로교육과	교육연구원	김승환
		교육연구사	심대현, 김효수
		행정주사	최봉석
<b>제작</b>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책임자	정은주
		공동연구자	김수진, 최인봉, 강민경, 김성경, 이현경
		파견교사	하은정
		연구조원	한금영, 이선희
<b>검토</b>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사	송준헌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사	정준형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사	정진구
	충청북도교육청	교사	이석재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사	박소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사	안정선



2024학년도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중학교**

항목별 훈령 및 지침(기재요령) 주요 변경 사항(최근 4년간)

2024년 2월 발행

발행처 |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한국교육과정평가원**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디자인 | (주)다원기획 044-865-8115